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732-01

INVESTMENT & BUSINESS GUIDE
러시아 · 카자흐스탄 · 우즈베키스탄

INVESTMENT & BUSINESS GUIDE

해외진출 우리기업을 위한 사례중심 현지 투자 법제

INVESTMENT & BUSINESS GUIDE

-  러 시 아
-  카자흐스탄
-  우즈베키스탄

Investment & Business Guide

해외진출 우리기업을 위한 사례중심 현지 투자법제해설서

러시아 · 카자흐스탄 · 우즈베키스탄 투자법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2012년은 한-CIS(독립국가연합) 수교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구소련 연방 해체 이후 독립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11개 국가를 말하는 CIS는 세계 원유 매장량의 20%, 천연가스 매장량의 40% 등 풍부한 천연자원과 2억7천명에 달하는 내수시장을 갖고 있어서 EU에 버금가는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기업들은 부족한 자원과 좁은 국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더 세계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CIS 지역은 이러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과 성장에 있어 큰 매력을 가진 시장이라 할 것입니다. 2000년 이후 CIS 지역에 대한 우리 수출은 연평균 25% 이상 증가했고, 작년에는 3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CIS의 교역액은 2011년 기준 260억 달러로 수교 당시인 1992년에 비해 26배나 증가하였으며, 對 CIS 투자도 2011년 누계 48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CIS 지역은 작년 어려운 세계 경제에서도 4.5% 수준의 건실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올해에도 선진국 경제권보다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역내 경제통합을 추진 중으로 향후 시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의 치열한 노력과 진취적인 도전정신을 조금이라도 뒷받침하고자 법무부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CIS 국가로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스 가이드 발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2010년 중국진출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가이드를 발간한 이래 지금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등 3개국 6권을 발간하여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비즈니스가이드도 러시아 등에 진출하는 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현지법령 정보와 구체적 자문사례 등을 담은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미 러시아 등 CIS 국가에 진출하여 있거나 새로이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참고하고 알아두어야 할 체크포인트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현지법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비즈니스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증보해나가는 한편, 일본, 인도, 중남미, 중동국가 등에 대한 비즈니스가이드도 새롭게 발간할 예정입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집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로펌의 변호사 분들을 비롯하여 본서의 기획 및 발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준 국제법무과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012. 10.

법무부장관



목·차

러시아 투자법제	10
I. 서론	10
1. 연구의 목적 및 개요	10
2. 연구방법	11
II. 외국인투자 규제	11
1. 외국인의 지위	11
2. 외국인 투자의 규제	12
III. 법인의 설립 및 기업법 개설	15
1.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15
2. 주식회사	17
3. 지점 설립을 통한 사업의 수행	23
IV. 주요 민사법 개요	24
1. 재산권	24
2. 담보에 관한 권리	24
3. 계약법	25
4. 불법행위법	25
V. 노동법 및 인사관리	26
1. 외국인 고용의 특례	26
2. 내국인의 고용의무	27
3. 근로자에 대한 처우	27
4. 근로계약의 종료	29
5. 노동조합	32
VI. 주요 투자관련 법제	33
1. 자원개발 법제	33
2. 건축 및 건설 관련 법제	37
3. 산림개발 관련 법제	40
VII. 조세	42
1. 부가가치세	42
2. 법인세	45
3. 체납/과납부 시의 처리	46

VIII. 기업결합 규제	47
1. 기업결합 신고 의무	47
2. 자연독점법에 의한 등록 의무	48
IX. 지적재산권 보호	49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산업디자인권의 보호	49
2. 상표권의 보호	50
3. 영업비밀의 보호	50
4. WTO 가입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50
X. 분쟁해결	51
1. 러시아 사법제도의 개요	51
2. 준거법 및 중재지의 결정	52
3. 중재판정 또는 외국법원 판결의 집행	52

카자흐스탄 투자법제 **57**

I. 서론	57
1. 연구의 목적 및 개요	57
2. 연구방법	58
II. 외국인투자 규제	59
III. 법인의 설립 및 기업법 개설	60
1. 주식회사	60
2. 조합	63
3. 지점 설립을 통한 사업의 수행	64
IV. 주요 민사법 개요	65
1. 재산권	65
2. 담보에 관한 권리	65
3. 계약법	66
V. 노동법 및 인사관리	67
1. 외국인 고용의 특례	67
2. 근로자에 대한 처우	67
3. 근로계약의 종료	67

목·차

VI. 지하자원 개발 관련 법제	71
VII. 조세	72
1. 부가가치세	72
2. 법인세	73
VIII. 기업결합 규제 및 공정거래법	75
1. 기업결합 신고 의무	75
2.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75
IX. 외국환 및 수출입 규제	77
1. 외국환 거래 신고	77
2. 수출입 규제	77
X. 지적재산권 보호	78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산업디자인권의 보호	78
2. 상표권의 보호	78

우즈베키스탄 투자법제 83

I. 서론	83
1. 연구의 목적 및 개요	83
2. 연구방법	84
II. 외국인투자 규제	85
1. 외국인의 지위	85
2. 외국인 투자법	86
3. 외국인투자 보호법	89
4. 외국인 투자의 규제	90
III. 법인의 설립 및 기업법 개설	91
1. 주식회사	91
2. 유한책임회사	92
3. 지점 설립을 통한 사업의 수행	93
IV. 주요 민사법 개요 노동법 및 인사관리	99
1. 재산권	99
2. 담보에 관한 권리	100

3. 계약법	100
V. 노동법 및 인사관리	102
1. 외국인 고용의 특례	102
2. 근로자에 대한 처우	102
3. 근로계약의 종료	103
VI. 주요 투자관련 법제	104
1. 자원개발 관련 법제	104
2. 건축 및 건설 관련 법제	104
3. 산림개발 관련 법제	106
VII. 조세	107
1. 법인세	107
2. 부가가치세	108
3. 개인소득세	108
4. 체납/과납부 시의 처리	108
VIII. 기업결합 규제	109
1. 기업결합 신고 의무	109
2. 내각의 결의	109
3. 자연독점법에 의한 등록 의무	109
IX. 지적재산권 보호	110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산업디자인권의 보호	110
2. 상표권의 보호	110
X. 분쟁해결	111
1. 우즈베키스탄 사법제도의 개요	111
2. 준거법 및 중재지의 결정	113
3. 중재판정 또는 외국법원 판결의 집행	114

Investment & Business Guide

해외진출 우리기업을 위한 러시아 투자법제



러시아 투자법제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개요

1991년 한·러 수교가 이루어진 이래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한·러 교역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2년에 양국 교역은 1억 9천만 달러였으나 2010년에는 99억 8천만 달러로 52배 급증하였고,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08년 181억 달러에 달해 1992년보다 90배 이상 급증하였다. 현재 러시아는 우리 나라의 22대 수출대상국이자, 14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직접 투자도 2000년대 이후 조금씩 늘어 2007년 2억 2천만 달러, 2008년 3억 6천만 달러, 2009년 4억 3천만 달러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현대자동차의 상트 페테르스부르크 공장 건설 등 대규모 직접투자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교역 규모의 폭발적인 증대와 투자의 다변화에 따라 그 동안 우리 기업이 러시아에 진출하는 방식은 단순한 교역 파트너에서 이제는 M&A를 통한 현지 기업의 인수, 일부 지분 인수를 통한 재무적 투자, 그리고 직접 공장을 설립하여 투자하는 방식 등 매우 다양한 양태를 띠어가고 있다. 특히 2011년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투자 다변화의 추세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교역의 증대와 투자 방식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러시아법에 대한 연구는 초보적인 수준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자료들이 대부분 단편적으로 러시아의 실정법을 소개하고 해설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실제로 기업이 투자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실무적인 쟁점을 다루고 있는 참고 자료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러시아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의 시작 단계부터 구체적인 운영 단계에 이르기까지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실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투자의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부터 시작하여, 법인 설립 등 투자 구조에 대한 검토, 그리고 구체적인 투자의 실행 단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민사적 쟁점 및 노동법, 조세,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투자의 시간적 진행 단계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관련 주제에 대한 러시아연방 및 자치기구의 법령, 법원의 판례 등 문헌에 대한 광범위한 수집 조사를 통하여 작성되었다.

다만, 법령 및 판례에 대한 기존 문헌의 조사 정리만으로는 러시아 투자 시 다양한 법적 쟁점이 제기되고 해결되는 능동적인 Mechanism을 온전히 형상화하기 어려운 만큼, 실제 투자 사례를 통하여 제기되었던 쟁점과 이에 대한 자문 사례를 통하여 확인된 사항으로 보완하여 보다 입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러시아법의 해석에 대한 유수의 현지 로펌의 견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다 실질적인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외국인투자 규제

1. 외국인의 지위

러시아 연방 헌법 제62조는 외국 시민이나 무국적자도 연방법이나 러시아가 체결한 국제조약이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러시아 연방 시민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며,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연방 법률이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자도 투자에 있어서 러시아연방 시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연방법률로, 우선 외국인의 체류와 법적 지위에 대한 기본법률인 “주 러시아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기본법률인 “러시아연방에서의 외국인 투자에 관한 연방 법률”을 들 수 있다.

“주 러시아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러시아 연방 헌법과 마찬가지로 연방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외국인은 러시아연방 내에서 러시아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은 러시아 연방에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는 못하며, “주 러시아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입국에 필요한 사증, 거주허가, 노동허가의 발급 및 불법 입국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등을 규율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의 입국 사증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나, 투자를 위한 입국 목적으로는 비즈니스 비자와 취업 비자를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비즈니스 비자는 1회(single-entry) 또는 2회(double-entry) 입국 허용 비자와 복수입국(multiple-entry) 허용 비자로 나누어 지는데, 1회 또는 2회 입국 허용 비자의 경우 체류기간은 명시된 비자유효기간으로 제한되며, 최대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이에 반하여, 복수입국 비자의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다. 단, 최장 체류기간은 각 180일 기간 동안 총 90일로 제한되므로, 만약 90일을 체류하였다면 출국을 해야 하며, 최장 체류기간인 180일 이전에는 재 입국이 허가되지 않는다. 한편, 취업 비자의 경우, 최초 발행되는 일반 취업비자는 최장 3개월 기간에 대한 단수입국 비자 형태로 발급되며, 이후, 고용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유효기간으로 복수입국취업 비자(multiple-entry work visa)를 발급 받을 수 있으나 그 유효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2. 외국인 투자의 규제

가.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률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는 1999년 7월 발효된 “러시아연방에서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연방 법률”¹에서 규율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에서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연방 법률”은 국채, 주식, 러시아 자산의 인수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외국인 투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원칙적으로 러시아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연방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개인 재산을 수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에서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연방 법률”의 가장 큰 특징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해당 투자가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단, 7년을 한도로 함) 관세나 연방세금의 세율 인상을 억제하는 제도이다. 위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 러시아 회사의 자본금 중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이 25%를 넘는 경우이거나, (ii) 투자금액이 10억 루블(러시아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1억 루블) 이상인 경우로서, 러시아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외에도 “러시아연방에서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연방 법률”은 영업활동 및 과실송금 보장, 지방정부의 인센티브제공 재량권 보장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¹N160-ФЗ,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

2008년 4월 29일 러시아연방 “국가안보상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분야의 외국인 투자절차법”²이 제정되어 발효됨에 따라 동법에 명시된 국가전략과 안보분야의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설립되는 러시아연방의 외국인투자 위원회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만 하게 되었다. 한편, 2011년 기존의 규제대상을 제외하거나,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범위를 높이는 취지의 개정법률(발효일 2012. 1. 7.)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어 기존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게 되었다.

이하 개정된 “국가안보상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분야의 외국인 투자절차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제한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영역은 크게 국가안보 관련 제조업 분야와 천연자원/에너지 관련 분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국가안보 관련 제조업 분야〉

- 방산 분야 산업 및 기술
- 우주 및 원자력 산업. 단, 원자력을 주된 사업분야로 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이를 민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TV 및 라디오 방송
- 전력 및 통신 산업 (전화 및 인터넷 제외)
- 신문 언론사

² N57-ФЗ “О порядке осуществле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в хозяйственные общества, имеющие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обороны страны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а”

〈천연자원/에너지 관련 분야〉

- 천연자원 탐사 및 채굴
- 석유 7000만 톤 이상, 가스 500만m³ 이상 채굴권 소유기업
- 금 50톤 이상, 구리 50만 톤 이상 채굴권 소유기업
- 백금 및 니켈 매장지, 대륙붕 전체에 대한 채굴권 소유기업

동법에 따르면 외국 정부기관 투자기업과 외국 민간투자기업은 다른 지위를 갖는데, 국가안보 관련 제조업 분야의 경우 외국 정부기관 투자기업은 기업 지분의 25%, 외국 민간투자기업은 지분의 50%까지, 천연자원/에너지 관련 분야의 해당기업은 외국정부기관 투자기업은 5%, 외국 민간투자기업은 25%까지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며, 초과 시에는 정부의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한편, 이러한 사전 승인의 취득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만 루블 이상 100만 루블 이하의 과징금에 처해질 수 있다.

III. 법인의 설립 및 기업법 개설

1.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가. 주요 특징

회사의 지분에 대한 지분 참여가 가장 제한되는 형태의 회사로서, 사원(지분권자)의 수는 최대 50명을 넘을 수 없으며, 최소자본금은 10,000 루블이다. 지분을 자유로이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권리의 안정성이 있는 반면에 자유로운 지분의 회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외국인 참여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사원의 일정 부분 이상을 러시아인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규제도 없다.

나. 설립절차

유한책임회사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서 설립된다.

- 1) 등록기관(국세청) 제출 서류³의 작성 및 서명
- 2) 자본금 납입을 위한 은행 계좌의 개설
- 3) 최소 자본금을 은행 계좌로 납입
- 4) 국세청에 서류 제출 및 등록 신청
- 5) 설립인가증의 수령
- 6) 의료보험, 사회보장보험, 연금보험 등의 가입, 인감의 작성
- 7) 당좌거래를 위한 은행계좌의 개설 및 영업의 시작

회사의 설립에는 러시아연방 민법, 유한책임회사법, 법인등록법이 적용되며, 통상 1월에서 2

³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서류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음

i) 등록신청서 ii) 정관사본 iii) 대표자 신분증 사본
iv) 등록수수료 납입 영수증 v) 은행이 발급한 신용 증명서

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한편,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시 사원이 1인일 경우, 정관으로 족하나, 2인 이상일 경우 정관 외에 사원들 간의 설립계약서와 설립의결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다. 지배구조

유한책임회사의 지배구조는 사원총회와 업무집행사원의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다. 업무집행사원이나 감독위원회 위원이 반드시 러시아 국적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외국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취임하려는 외국인이 우선 러시아연방으로부터 근로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주요한 기능 및 권한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업무집행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인 업무 집행권 • 회사의 대표권 • 직원에 대한 인사권
사원총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의 수정 • 업무집행사원의 임면 • 연간 회계보고서의 승인 • 이익배당의 결정 • 기타 합병, 해산 등 회사 중요사항의 결정
감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영업활동에 대한 결정 • 주요 거래에 대한 승인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검토 및 승인 • 감사의 임면

라. 외국인에 대한 특례

외국인도 별도의 추가적인 승인 절차 없이 자유롭게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나, 다만, 특정한 사업 영역에 있어서는 회사의 설립 및 지분의 취득이 제한된다. 즉 러시아연방 전략산업법에 의하면 동법에서 규정하는 42개의 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제한되는바, 무기제조, 항공, 우주 산업, 핵 관련 산업, 수산업 등의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며, 방송, 통신 분야에서 3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금지된다.

2. 주식회사

가. 의의 및 종류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민법 제96조부터 제104조까지에 포괄적인 규정이 있고, 주식회사법에 설립, 조직 변경, 청산, 주주의 권리, 주식 및 주권, 사채, 조직개편, 주식회사의 기관 등에 관한 더 구체적인 규정들이 있다. 주식회사라 함은 자본금이 일정수의 주식으로 분할되어 있고, 사원인 주주들이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으나,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회사를 말한다(민법 제96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안보상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분야의 외국인 투자절차법”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유에 관한 제한은 없다.

한편, 러시아의 주식회사는 개방형 주식회사(Open joint stock company, OJSC)와 폐쇄형 주식회사(Closed joint stock company, CJSC)로 구분된다. 개방형 주식회사는 주식의 양도가 자유롭고, 주주의 수에 제한이 없으나, 반면에 폐쇄형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는 주식회사이지만, 사원 수가 50인이하로 제한되고 주식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다른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유한책임회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개방형 주식회사와 폐쇄형 주식회사의 차이점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방형 주식회사	폐쇄형 주식회사
정의	주주가 다른 주주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주식을 처분할 수 있음	주식을 양도하려면, 다른 주주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나머지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한이 있음
발행주식 공모	가능	불가능
주주의 우선권	신주우선인수권	신주우선인수권, 우선매수청구권
최저자본금	100,000 루블	10,000 루블
재무제표의 공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공시 의무	공시의무 없음
주주 수의 제한	없음	50명 이하. 50명을 초과할 경우, 1년 이내에 공개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여야 함. 이에 위반하면 법정 청산

주식회사의 상호에는 러시아어로 된 정식 상호 및 약칭 상호, 주식회사임을 명시하는 표현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공영기업이 사유화로 인하여 주식회사가 되는 경우 민법이나 주식회사법보다 사유화에 관한 법률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나. 회사의 설립

(1) 발기인

발기인(учредитель)들은 발기인총회의 결의로서 주식회사의 설립을 결의한다. 위 결의에는 회사 설립, 정관의 승인, 기관의 구성 및 선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발기인들은 회사 설립 과정에서의 업무 분담, 자본 규모, 발행주식의 종류 및 총수, 각 발기인이 인수하는 주식의 수와 인수금액, 납입절차 등에 관한 합의를 담은 서면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이 서면계약서는 주식회사의 설립문서는 아니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이상 주식회사법 제9조). 1인 회사는 다른 1인 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주식회사법 제10조).

발기인들은 회사 설립 중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주식회사는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발기인들이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나 이는 창립총회에서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라는 사실이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주식회사법 제10조).

(2) 설립절차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기본적으로 앞서 설명한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절차와 동일하다. 발기인의 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설립계약서 및 발기인 총회의 의사록이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참고로,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설립 시 설립에 참여하는 자 간에 체결되어야 할 기본 서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설립자 수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 설립결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 설립결의
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 설립계약서 • 사원총회 의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 설립계약서 • 발기인총회 의결서

정관은 회사의 주된 사항을 정하는 문서로서, 이에 기재될 사항은, ① 회사의 정식 상호 및 약칭 상호, ② 소재지, ③ 회사의 형태, ④ 회사 설립 당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액면가, 종류, 우선주의 종류, ⑤ 각 종류별 주식을 취득한 주주의 권리, ⑥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⑦ 기관의 구성, 권한, 의결 절차, ⑧ 주주총회의 소집 및 의결 절차, 주주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 또는 전원 일치로 결의하여야 할 사항, ⑨ 대표사무소 및 지점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정관의 개정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나, 정관에서 미리 자본의 증가, 주식소각을 위한 자사주 취득으로 인한 정관의 개정 등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한다고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관 개정을 할 수 있다. 대표사무소 및 지점의 설치나 폐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정관의 개정 또한 등기사항인데, 정관의 개정은 등기된 때로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자본금 및 지분의 인수

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은 주주들이 인수한 회사 주식의 액면가 총액이다. 설립 당시 폐쇄형 주식회사의 자본총액은 10,000 루블 이상이어야 하고, 개방형 주식회사의 자본총액은 100,000 루블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의 납입방법, 즉 현금으로 납입할 것인지 또는 현물출자를 할 것인지 여부는 설립계약서로 정할 수 있다. 현물출자를 할 경우 자산에 대한 평가는 발기인 사이의 합의에 의해 정하되, 독립적인 감정인을 가격 결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현물출자된 자산의 평가액이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독립적인 감정인의 감정을 거쳐야 한다.

회사 설립 시 회사의 모든 주식은 발기인들이 인수한다(주식회사법 제25조 제2항). 설립 시 발행되는 주식의 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은 회사의 국가등록 후 3월 이내에 납입되어야 하고, 전체 자본금은 국가등록 후 1년 이내에 납입되어야 한다. 위 1년 기간 내에 자본금이 전부 납입되지 않은 경우, 회사가 납입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주식회사법 제34조). 설립 당시 정관에 기재된 자본금이 완납될 때까지 주식의 공모는 허용되지 않는다(주식회사법 제33조 제3항).

회사설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 및 그 이후 회계연도 말에 회사의 순자산이 설립자본금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자본을 감소하고, 이를 공고 및 등기하여야 한다. 2 회계연도 이후부터 회사의 순자산이 법정 최저자본금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를 청산하여야 한다(민법 제99조).

(4) 주주의 수

주식회사는 1인이 설립할 수 있고, 설립 후 1인이 주식 전부를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1인 주식회사로 유지될 수 있다.

개방형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의 수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폐쇄형 주식회사의 주주의 수는 50인을 초과할 수 없다. 폐쇄형 주식회사의 주주의 수가 50인을 초과할 경우, 해당 회사는 1년 이내에 주주의 수를 50인 이하로 줄이거나 개방형 주식회사로 전환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청산을 명하여야 한다(주식회사법 제7조).

다. 주주의 권리

(1) 주주총회 의결권

주주총회는 정관개정, 조직개편, 자본의 변동 등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주식회사법 제47조). 보통주식의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주식회사법 제31조).

우선주식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주식회사법 제32조). 다만, 회사의 조직변경 및 청산에 대한 결의, 우선주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관의 개정에 관한 결의, 배당순위의 변경에 관한 결의에서는 우선주식의 주주도 의결권을 갖는다. 우선주주(누적 우선주 포함)는 전기 영업실적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다음 회의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배당금이 지급되면 이러한 권리는 중지된다.

(2) 배당 및 잔여재산분배 청구

주식회사의 주주는 배당청구권 및 회사 청산시 회사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을 갖는다.

(3) 신주인수권

주주는 사모를 통해 배정하게 되는 신주 또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발행에 있어 인수권을 가진다. 공모의 경우에도 모든 주주는 인수권을 가진다(주식회사법 제40조).

(4) 주식의 처분 권한

개방형 주식회사는 발행 주식에 대한 공개 모집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법규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발행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개방형 주식회사는 연방 법규 또는 정관에서 특별히 사모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사모를 받을 수 있다. 개방형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 및 주주는 회사의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갖지 아니한다(주식회사법 제7조 제2항).

그에 반하여, 폐쇄형 주식회사의 주주는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 비율에 따라 주식의 양도를 원하는 다른 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정관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

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폐쇄형 주식회사는 주주가 주식취득에 관한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매수권을 행사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다(주식회사법 제7조 제3항).

라. 주식회사와 공시

주식회사는 러시아연방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회계기록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은 관련 러시아연방 법령 및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회계 업무 처리 현황, 회사의 재산 상태 등을 담은 재무제표 및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대중매체를 통하여 주주,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주식회사는 설립계약서, 정관, 등기부등본, 회사재산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 내부 규정, 대표사무소 및 지점의 설치·현황에 관한 서류, 재무제표, 회계 장부, 감사보고서,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감사록, 합의제 업무집행기관의 회의록, 투표 용지, 주주총회 위임장 사본,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특수관계인의 목록, 주주명부, 주식발행 안내서, 기타 관련 러시아연방 법령이 공개 의무를 부과한 회사의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주식회사는 연방 증권시장 위원회 규정(2003년 7월 16일자 Постановление ФКЦБРФ №03-33/ПС 제2조 참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상, 또는 영구히 위 서류를 업무집행기관의 소재지에 보관하여야 한다.

주식회사는 또한 러시아연방 독점규제법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주식회사법 제95조).

한편, 개방형 주식회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받아 ① 연차보고서, 당해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② 관련 러시아연방 법령에 따라 작성된 주식발행 안내서, ③ 주주총회 소집 공고, ④ 증권시장을 관할하는 연방 행정기관이 정하는 기타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주식회사법 제92조).

3. 지점 설립을 통한 사업의 수행

가. 대안으로서의 검토

러시아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 외에, 연락사무소, 또는 지점(즉, Branch Office)을 현지에 설치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Branch Office란 별도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지는 않으나, 러시아연방 법무부 산하 국가등록청에 등록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는 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1년, 2년, 3년 또는 5년의 유효기간으로 발급되며, 기간 만료 시 다시 갱신할 수 있다.

나. 인가절차

Branch office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서 인가 받을 수 있다.

- 1) 등록기관(국가등록청) 제출 서류의 작성 및 서명
- 2) 국가등록청 등록
- 3) 인감의 작성
- 4) 국세청에 서류 제출 및 등록 신청
- 5) 국가통계청 등록
- 6) 사회보장보험 가입
- 7) 당좌거래를 위한 은행계좌의 개설 및 영업의 시작

Branch office의 설립에는 러시아연방 민법, 외국인투자법이 적용되며, 통상 3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러시아연방 내에 설립할 수 있는 branch office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회사의 선택에 따라 복수의 branch office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 대표자

Branch office는 대표자가 모기업에 의하여 수권 받은 한도 내에서 통상적 영업에 대한 집행권 및 대표권을 갖는다. 대표자가 반드시 러시아 국적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외국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취임하려는 외국인이 우선 러시아연방으로부터 근로허가를 받아야 한다.

IV. 주요 민사법 개요

1. 재산권

러시아연방 헌법 및 민법전은 사유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러시아연방 토지법은 토지에 대한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러시아 내의 토지를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으나, 몇 가지 제한이 따른다. 즉「러시아연방 농업용지거래법, N101-Φ3」제3조는 외국인, 외국법인 그리고 외국인이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가지고 있는 러시아법인은 농업용 토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경지대 또는 항만 지역의 토지는 외국인의 소유가 금지된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등기를 하여야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바, 대표적으로 과거 소비에트 시절의 집단농장을 분배 받은 농민들이 분배 받은 토지를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한 경우 해당 회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회사가 그 토지를 다른 회사에 매도할 경우에는 미리 이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적법하게 소유권이 이전될 수 없다. 과거 집단농장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권리의 이적 과정이 불분명하거나 권원의 입증자료가 멸실된 경우가 종종 있으며, 또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되는 만큼 항상 토지의 거래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2. 담보에 관한 권리

러시아연방법상 외국인 또는 러시아 내 비거주자도 러시아 내 자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한은 없다. 부동산은 물론 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한 담보 설정도 모두 가능하다. 다만, 은행 예금에 대한 질권의 설정은 실무상 허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담보의 설정 및 그 집행에 관하여는 민법 외에도 담보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담보권의 설정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공증을 받아登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 후순위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3. 계약법

러시아연방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계약의 주요한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러시아연방 민법 상 계약은 당사자들이 달리 명시하거나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유상계약임을 전제로 하므로, 만약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대한 대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의무의 이행자는 유사한 의무의 이행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을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러시아연방 민법의 특징 중 하나는 가계약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이다. 가계약은 당사자가 일정한 계약의 조건을 정해 놓고 향후 정해진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만약 일방 당사자가 이러한 본 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법원에 본 계약의 체결을 강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통상 투자 단계에서 체결되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나 Protocol of Intent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가계약임을 규정하지 않는 한, 가계약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4. 불법행위법

러시아민법 제1064조 이하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타인의 인격 또는 재산을 침해하거나 법인의 재산을 침해한 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에게 과책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에는 이러한 손해배상 의무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책 여부를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우리나라 민법과는 달리 과책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여기서의 과책이란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가능하였던 조치를 모두 취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행위자의 주관적인 인식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및 학설의 입장이다.

한편 불법행위법에 대한 특칙으로 러시아민법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정부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 및 지방정부의 배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불법행위는 행정처분에 국한되지 않으며, 법에 위반된 훈령이나 고시 또는 자치법령의 제정·공포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V. 노동법 및 인사관리

1. 외국인 고용의 특례

가. 고용에 대한 제한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고용 및 고용인원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은 없으나, 다음 사업연도에 외국인 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당해 사업연도의 5월 1일 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에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수, 해당 직위 및 국적을 기재하여 외국인 고용 쿼터의 배정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의 수는 배정된 쿼터 내로 제한되게 된다. 다만, 회사의 이사, 공장장 등 일정한 범위의 전문 직종의 경우 쿼터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나. 고용절차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① 국가고용센터로부터 외국인의 고용이 합리적인 사유를 갖추었다는 결정의 취득
- ② 연방이민국으로부터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는 허가의 취득
- ③ 연방이민국으로부터 채용하려는 해당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의 취득

고용허가는 그 유효기간을 고용 예정 기간에 맞추어 발급되나, 1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다만, 쿼터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문 직종의 경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허가가 발급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고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될 수 있으며, 갱신 횟수의 제한은 없다.

회사는 연방이민국에 채용 예정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한 후부터 해당 외국인에 대한 초청장을 발급을 위한 목적으로 연방이민국에 회사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후부터 초청장의 발급이 가능하다. 노동 비자는 초청장이 발급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며, 복수 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고용허가의 유효기간 동안 유효하다.

만약 회사가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80만 루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고용허가를 받은 근로자가 6개월 이상 러시아 밖에서 체류하게 될 경우,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도 주의하여야 한다.

다. 고용 후 등록의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자신의 러시아내 체류지⁴의 주소를 등록 하여야 하며, 등록된 주소지를 3일을 초과하여 비우게 될 경우, 새로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러시아 내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회사는 국세청, 국가고용센터, 근로감독관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고용이 종료된 경우⁵에도 마찬가지이다.

2. 내국인의 고용의무

러시아연방 생산물분배법 등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일정 수나 비율 이상의 러시아 현지인을 고용하여야 한다는 규제는 없다.

3.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가. 고용계약의 체결

러시아연방 노동법에 의하면, 노동계약에는 i) 근로자 및 사용자의 성명, ii) 근로자의 신분증 정보, iii) 사용자의 대표자에 대한 정보, iv) 사용자의 사업자등록번호, v) 근로계약의 체결일자 및 장소가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하며, 다음에서 열거하는 근로계약의 조건이 반드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⁴ 실제로 체류하고 있는 곳의 주소를 말하며, 호텔이 될 수도 있다.

⁵ 이 경우, 연방이민국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 i) 근무지
- ii) 담당업무
- iii) 근로 의무의 시작기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
- iv) 임금, 수당 및 보너스에 대한 규정
- v) 근무시간 및 휴가에 관한 규정
- vi) 근로의 성격이 위험한 업무의 수행일 경우, 근무환경 및 위험에 대한 추가 수당의 규정
- vii) 각종 사회보험에 대한 규정

나. 최저임금

러시아연방의 최저임금은 러시아연방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규율되며, 2009. 1. 1. 기준 4,330 루블이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연방 전체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써, 지역에 따라서 이 기준을 상회하는 최저임금 규정이 있을 수 있는바, 참고로 모스크바의 경우 2010. 5. 1. 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10,100 루블이다.

다. 근로시간 및 휴가

러시아연방의 법정 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 주 40시간이다.

초과시간 근무에 대하여는 처음 두 시간(초과 근무를 하는 근무일을 기준으로 최초 2시간을 의미한다)에 대하여는 시간 당 평균임금의 1.5배, 그 다음 시간에 대하여는 시간 당 평균임금의 2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수당의 지급 대신에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의 휴가를 가질 수도 있다. 초과근무 시간은 연속하는 2 근무일을 기준으로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간 12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자는 12일의 법정 공휴일 외에, 연간 28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러시아연방 노동법 제 19조). 이 외에 가족의 경조사 등에 무급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임신부의 경우 출산 전후 70일간 출산 휴가를 가질 수 있다⁶.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휴가가 허용된다⁷.

휴일 및 휴가 기간 중 근무는 근로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 경우 하루 평균임금의 최소 2배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근무 시간 중 휴식

추운 날씨에 외부나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서 일하는 근로자, 짐의 운송 및 하역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 중 유급의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러시아연방 노동법 제109조).

4. 근로계약의 종료

가.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종료될 수 있다.

- ① 당사자 간의 합의
- ② 기간의 만료
- ③ 근로자의 사직
- ④ 사용자의 변경
- ⑤ 구조조정
- ⑥ 근로자의 능력부족 또는 반복적인 업무상의 과실

⁶ 이 경우, 임산부는 러시아연방 사회보험에서 지급하는 연금을 받게 되며, 별도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단, 러시아연방 사회보험에의 회사의 가입이 강제되므로 실질적으로 회사가 임금을 보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⁷ 이 경우에도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러시아연방 사회보험에서 연금이 지급된다.

⑦지극히 불량한 근무태도 등 근로자의 과실: 무단결근, 근무 중 음주, 마약 투입, 사업장에
서의 절도, 횡령, 취업 시 위조 서류의 제출 등

⑧병역의무의 이행

⑨기타 법령의 위반으로 근로계약의 지속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다만, 사용자가 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간 만료 3일 전에는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가 없는 경우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
약으로 간주되어, 근로자는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게 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기타의 경우 해지 통보의 기간에 대하여는 각 해지의 사유에 따라 통보의 기간이 달리 규정되
어 있다⁸. 다만, 어느 경우이든 해지의 통보는 서면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귀책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해지 전 징계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 경우, 법령 상의 의무는 아니나, 해지의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이 종료되게 되면, 사용자는 해지 시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히
구조조정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직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해지사유는 기간의 만료를 제외하고는 앞서 설명한 기간
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과 동일하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55세에서
60세 사이에 은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법령상 강제되는 것
은 아니며, 근로자의 정년을 이유로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기타 근로계약의 종료 절차 및 종료 시의 효과에 대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과 동
일하다.

⁸예컨대, 회사의 해산이나 구조조정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2달의 사전 통지가 주어져야 한다.

나. 경업금지

러시아법에 의하면, 퇴직 후 경쟁업체에 대한 취업이나 경쟁 사업의 영위, 다른 사원의 유인 금지 등의 경업금지 약정은 무효이며, 심지어, 근무 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금지하는 약정도 무효이다. 다만, 회사의 대표자에 대하여는 근무 기간 중 다른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다.

다. 퇴직금

러시아연방 노동법 제178조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 ① 회사의 해산 또는 구조조정에 의한 해고의 경우: 1개월 분의 평균임금
- ② 근로자의 사임, 질병이나 장애를 사유로 한 해고, 병역의무 이행, 원 근로자의 복직⁹: 2주일 분의 평균임금

다만,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위 기준 이상의 퇴직금을 약정하는 것도 무방하며, 이 경우, 약정된 퇴직금 상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⁹결원된 근로자를 충원한 경우로서, 원래의 근로자가 복직한 경우

5.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① 근로자의 대표권
- ② 단체협상권한 및 단체협약 체결권
- ③ 단체행동권 및 분쟁 개입권
- ④ 노조조합원에 대한 교육의 제공
- ⑤ 회사의 각종 의사결정 절차에서의 의견 제출. 다만, 노조의 의견은 사용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다만, 현실적으로 러시아에서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강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한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VI. 주요 투자관련 법제

1. 자원개발 법제

가.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인허가 제도

러시아에서 지하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연방 지하자원 관리청으로부터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인허가는 해당 행위 별로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된다: (i) 지질탐사 허가, (ii) 탐사 및 채굴 허가, (iii) 생산 허가, (iv) 종합 허가(앞서의 허가를 모두 포함한 허가).

지질탐사 허가는 최대 5년을 한도로 부여되나, 필요 시 연장될 수 있다. 다른 종류의 허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간 동안 발급되나 실무적으로는 20년 또는 25을 기간으로 발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기기간의 만료 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지질탐사 허가를 제외한 나머지 허가는 모두 입찰이나 경매를 통하여 부여된다. 부여된 인허가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나,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허가권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등과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양도가 허용된다.

나. 생산물분배법

(1) 생산물분배법의 개요

생산물분배협정(Product Sharing Agreement, 이하 “PSA”)이란 자원의 채굴 및 판매에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과 그 자원의 매장지를 관할하는 국가와의 사이에 체결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민간기업의 투자로 생산을 시작하되, 생산물의 일정 부분을 매각한 대금으로 투자에 대한 비용을 보전하고, 나머지 생산물에 대하여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투자 기업이 분배하도록 하는 약정을 말한다.

PSA는 러시아연방 생산물분배법(이하 “생산물분배법”)에 의하여 규율되는데, 생산물분배법은 1995.12.31. 제정된 이래, 1999.1.7., 2001.6.18., 2003.6.6., 2003.6.29., 2004.12.29., 2008.12.30., 2010.5.19. 7차례에 걸쳐 개정이 되었다.

현재 생산물분배법은 3장 26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 내지 제5조로 이루어진 총칙에서는 동 법이 규율하는 법률관계, PSA에 포함될 내용, 당사자 및 유효기간 등을 다루고 있으며, 제 6조 내지 제23조까지의 제2장은 협정의 체결절차, 이행, 생산물 분배, 조세, 정산, 투자자 권리의 보호, 분쟁해결 등 협정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주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 24조 내지 제26조의 결론에서는 생산물분배법의 발효시기 및 법의 이행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2) 생산물분배법의 주요 내용

(가) PSA의 주요 내용(생산물분배법 제2조)

러시아 PSA 제도의 특징은 PSA 계약의 체결 외에 지하지원의 탐사 및 개발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라이선스는 협정서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발급되며, 발급된 라이선스는 협정서 유효기간 동안 유효하며, 연장 혹은 재발급될 수 있다(생산물분배법 제4조 제2항). 만약 PSA에 의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된 경우, 라이선스는 30일 이내에 재 발급되어야 한다(생산물분배법 제16조 제2항)

PSA는 러시아 연방 정부에 의하여 미리 PSA에 의한 개발이 허가된 자원 매장지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이 러시아 정부가 공표한 지하자원 매장지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라면 우선 지하자원 매장지 목록을 개정하여 해당 지역이 이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하자원 매장지 목록은 러시아 연방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개정이 되므로, 이 경우 사실상 PSA에 대한 러시아 연방 의회의 허가라는 요건이 추가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지하자원 매장지 목록의 변경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점은 2003년의 생산물분배법의 개정으로 지하자원 매장지 목록 편입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이 부과되었다는 점이다. 즉, 지하자원 매장지 목록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이 PSA가 아닌 다른 방식에 의한 지하자원 개발이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하며,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없음이 증명되어야 한다(생산물분배법 제2조 제4항).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은 해당 지역에서, PSA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개발권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고, 동 경매에서 참가가 부재로 경매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증명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다(생산물분배법 제2조 제4항).

다른 방식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지하자원 매장지 목록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본 지하자원 매장지 개발이 도시 형성에 필요한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고, 본 지하자원 매장지의 종료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②본 지하자원 매장지 개발이 러시아 연방 대륙붕, 극지방 및 그 인근 지역에 있거나, 주민 거주지, 교통 및 기타 인프라 설비가 없는 지역에 위치하는 유용광물의 유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 ③본 매장지 개발이 복잡한 광산 및 지질학적 조건에 위치하고, 채취가 매우 어려워 비용이 많이 드는 특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

이미 PSA와 다른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던 개발자도 해당 지역의 지하자원 매장지 목록 등재를 신청하여 PSA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청인은 기존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후 위에서 설명한 바대로 경매 절차를 통하여 다른 개발의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2004년 생산물분배법의 개정 전에는 기존의 개발자에게 PSA 체결에 대한 우선권이 인정되었지만 현재에는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경매와 입찰을 거쳐야 한다. 다만, PSA 체결을 위한 입찰 조건에서 기존 권리자에 대한 비용 보상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다.

생산물분배법의 또 다른 문제점은 탐사 및 예측된 유용 광물 매장량의 30%를 넘지 않는 조건으로만 생산물 분배가 허용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약은 PSA를 통하여 채산성을 기대할 수 있는 매장지의 수를 현저히 제약시키는 문제가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제약에 의할 경우,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매장지의 수가 5, 6개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는 실정이다. 현재, 30% 제한으로 인한 지나친 제약을 완화하기 위하여 동 비율을 40%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으나, 수 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기간에 이러한 상황이 호전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협정 체결 절차 및 당사자의 결정(생산물분배법 제6조)

협정 체결의 당사자는 입찰에 의하여 결정되며, 낙찰자는 입찰 조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자로 결정된다. 지하자원매장지 이용조건 및 협정안의 작성은 러시아연방 정부의 관계 기관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러시아 자치 공화국 등의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 작업의 이행 조건(생산물분배법 제7조)

동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특기할 점은 도급업자, 공급업자, 운송업자 등 작업의 이행

과 관련하여 러시아 법인에게 참여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1999년 생산물분배법 개정 전에는 우선권 부여에 대하여 “계약 조건이 동등할 경우”라는 단서가 부가되어 있었으나, 1999년 개정으로 이러한 단서가 삭제되었으므로 현재에는 러시아 법인이 제공하는 거래 조건이 다른 법인이 제공하는 것에 비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러시아 법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게 되었다.

또한, 고용인력의 80% 이상을 러시아 국적자로 고용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 및 기술적 수단, 재료의 구매대금 대비 70% 이상을 러시아산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동 조 제2항). 여기서 러시아산이란 한 제품에서 부품, 구조물 등 금액대비 50% 이상이 러시아 연방 영내에서 러시아 연방 법인이거나 국적자에 의하여 생산된 것을 말한다.

다만, 위 조항은 러시아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WTO 협정과 상치될 경우, 그 한도 내에서 효력을 잃게 된다. 현재 러시아가 2010년 말 가입을 목표로 WTO 가입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향후 동 조항의 대대적인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라) 생산물의 분배(생산물분배법 제8조)

전체 생산량은 투자자가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보상제품과 이익분배의 대상이 되는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보상제품의 비율은 전체 생산량의 75%를 넘을 수 없지만, 대륙붕에서 생산을 하는 경우 95%까지 증가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와는 다른 생산물 분배 방식에 대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분배되는 부분은 68%를 초과할 수 없다. 당사자가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하나의 분배방식을 택하기로 결정하였다면, PSA 계약 기간 중 다른 분배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마) 조세 특례(생산물분배법 제13조)

과세와 관련한 PSA의 특징은 사업활동으로 국가에 지불할 세금이 생산물의 이익분배로 대체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PSA의 특징을 반영하여, 2003년 개정 전 생산물분배법은 “법인세와 지하자원 사용 부담금을 제외하고, 투자자는 협정 기간 중 러시아 연방 법률 정하는 세금 및 부담금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2003년 생산물분배법의 개정으로 동 조항이 삭제되어 현재는 PSA에 대하여도 러시아 연방 세법이 직접 적용되고 있다.

러시아 연방 세법은 제26-4장에서 PSA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는바, 동법 제346조의 35에 의하면,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세금 및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사회보장세, 지

하자원 채굴세, 지하자원 사용부담금, 환경부담금, 수자원 사용 부담금, 관세, 토지세, 소비세. 다만, 앞서 언급한 세금 및 부담금 중 지하자원 채굴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 및 부담금의 경우 투자자가 먼저 납부하면 국가가 이를 환급하여 주어야 한다. 참고로, 법인세의 경우, 비환급 세금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0.1.1. 부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2. 건축 및 건설 관련 법제

가. 사전 제안서의 승인

러시아연방 도시계획법(이하 “도시계획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주요건축대상¹⁰의 경우 관련 서면에 대하여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록 연방법에 그 근거는 없으나, 관련 서면에 대한 사전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대규모 공장의 신설과 같이 공사의 규모가 클 경우 사전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사전제안서의 구성

사전 제안서는 건설대상의 명칭과 위치, 프로젝트 단계, 발주자, 설계기관 및 설계 책임자의 성명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전제안서에는 설계도 등 건설 대상에 대한 정보와 기본 지표 데이터 등 건설 지역 주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바, 구체적으로 사전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건설대상의 외부 구성, 구조의 특성 등을 나타낸 사진 자료
- 건설대상에 대한 해설 자료(대상의 기본적 특징, 기술 경제적 지표, 건설대상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경제적 효과성 산출 결과)
- 건설대상에 대한 종합계획(토지이용 및 건설규제에 관련된 사항, 건설대상 예정부지에 대한 서류 준비 기간, 종합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근거)
- 건설에 대한 결정 사항(건설 공사의 순서가 포함된 건설대상의 외부 및 내부공사와 사용하려고 하는 건축 자재 등에 대한 자료)

¹⁰ 도시계획법 제 1조 제 10항은 “주요 건축 대상”을 “건물, 구조물 및 시설의 건축”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는바, 따라서 제조 공장의 건축 역시 주요 건축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 프로젝트 개요에 대한 발주자 확인서
- 구조에 대한 결정 사항(구조 안전과 관련한 건설대상 구조의 선택과 적용에 관한 자료)
- 입증자료(층별 설계도, 정면도 등)
- 주변 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환경보호 방안, 건설 과정 중 발생 폐기물의 최적 처리방안 및 자원절약기술의 도입)
- 소방방재에 관한 사항
- 기술적 시스템 및 설비
- 엔지니어링 시스템의 기본도해(각각의 장비나 설비에 필요한 전력, 건설대상 외부 및 내부 케이블 공사, 난방 가스공급 수도 배수 원격조정실 시스템 관리)
- 필요전력 산출
- 기타 기술적 결정에 관한 사항

(2) 사전제안서와 관련한 행정 규제의 검토

사전 제안서는 주 정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제안서의 제출 시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규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전 제안서에 대한 전염병통제 및 공중보건청의 허가(필요한 경우)
- 사전 제안서에 대한 환경보호청의 허가(필요한 경우)
- 사전 제안서에 대한 철도청의 허가
- 사전 제안서에 대한 과학 및 공업발전청의 허가
(건설대상이 공업지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 기술운송안전 보장국의 허가

- 도시환경미화국의 허가

나. 건설 작업에 필요한 인허가의 검토

건설 관련 서면에 대한 정부의 심사와는 별도로 건설 행위 자체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다음과 같은 규제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율규제위원회(SRO)

과거 건설, 설계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해당 면허를 취득해야 했으나, 2008. 1. 1. 법의 개정으로 현재는 러시아연방 도시계획법에 의한 자율규제위원회(SRO)에 가입되어 있다면 인, 허가 없이 설계 및 공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55조의 3에 의하면, 자율규제위원회는 ①설계조사, ②기술문서작성, ③건설업의 각 종류별로 구성되게 되어 있으므로, 설계 및 공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술한 세 개의 자율규제위원회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¹¹.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자회사도 자율규제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러시아연방 도시계획법은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자회사에 대하여 기타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법령의 규정은 없으나 실무적으로, 러시아의 건축사, 설계사 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한 기업만이 자율규제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실제로, 건설사업에 투자하는 많은 외국 법인들이 현지 법인을 통하여 이들을 고용하고 현지 법인이 자율규제위원회에 가입하는 형태가 많이 선호되고 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자율규제위원회는 ①설계조사, ②기술문서작성, ③건설업의 각 행위별로 별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을 뿐, 각 행위 내에서의 건설 대상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건설업에 대한 자율규제위원회에 가입하였다면 건설하려는 대상의 종류와 상관없이 건설을 할 수가 있으며, 건설하려는 대상의 종류별로 별도의 허가나 가입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¹¹ 러시아연방 도시계획법 제55조 제6항에 의하면 단일한 법적 주체가 복수의 자율규제위원회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2) 가입절차 및 소요시간

자율규제위원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정관, 등록증명서(만약 외국기업이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본국의 등록증명서를 러시아어로 번역한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가입하려는 자율규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 서류가 접수되면 자율규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가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가입이 결정되면, 신청인은 자율규제위원회에 가입 수수료를, 자율규제위원회 보상 기금에 기여금을 각 납부하여야 한다. 가입수수료와 보상 기금에 대한 기여금은 지역별 자율규제위원회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가입수수료의 경우 최대 50만 루블, 보상 기금에 대한 기여금은 연간 8만 루블 정도가 일반적이다.

(3) 외국법인에 대한 특례

(가) 자율규제위원회와 관련한 특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율규제위원회와 관련하여 러시아 건축사와 설계사 자격을 가진 자의 고용의무를 제외하고는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자회사에 적용되는 특례는 없다.

(나) 세법에 의한 규제

다만, 러시아 내에서 건축물의 신축, 개축, 부동산에 대한 개축 등을 행하는 외국 회사는 그러한 행위의 준비행위에 착수한 시점부터 러시아연방 내에 영구적인 영업 거점을 설립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러시아 세무당국에 대한 신고 의무가 부과되게 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3. 산림개발 관련 법제

가. 산림에 대한 임차 계약

러시아의 임업 자원에 대한 개발은 통상 산림을 정부로부터 임차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외국기업도 산림을 임차할 수 있다. 산림에 대한 임차계약은 산림이 위치한 해당 지방정부와의 사이에 체결되며, 벌목을 목적으로 산림을 임차하는 경우, 그 계약 기간은 1년에서 49년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합의하는 바에 의한다.

나. 산림사용계획서 및 산림신고서의 제출 의무

러시아연방 산림법 제88조 제1항은 산림을 임차한 자는 산림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출된 산림사용계획서는 연방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러시아연방 산림법 제89조 제1항).

이러한 산림사용계획서에는 러시아연방 산림법에 따른 조림의무 및 산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참고로, 「산림사용계획서 승인 규칙(2007. 5. 14. 러시아연방 농림부 규칙 제125호)」은 산림사용계획서의 승인 여부는 원칙적으로 관련 서류의 제출 시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되, 10일 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결정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벌목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매년 산림사용계획서에 기반하여 작성된 산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러시아연방 산림법 제26조), 구체적으로 산림신고서를 연중 어느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 상의 제한은 없다. 다만, 「산림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규칙(2008. 12. 8. 러시아연방 농림부 규칙 제529호)」에 의하면, 최소한 벌목개시일로부터 10일 전에는 산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산림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 후 10일이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목을 시작할 경우, 산림의 불법사용으로 간주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다. 환경보호 및 조림의무

러시아연방 산림법 제62조 제2항은 벌목을 위하여 산림을 임차하는 경우, 해당 산림의 조림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림 의무 외에, 러시아연방 산림법 및 관련 연방정부 결정에 의하여 임차인은 산림 및 환경보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 소방설비의 구비 의무
- 화재 발생시 진압 의무
- 작업 시 위생 및 안전 조치의 준수 의무
- 도로, 교량, 절개지를 보호하고 적절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

VII. 조세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 용역 등의 판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 과세대상

- 상품(서비스 및 용역)판매, 담보물의 매각, 배상계약 또는 계약갱신에 따른 상품(인적 용역 결과물, 서비스제공)의 인도, 재산상의 권리의 양도
-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법인의 과세 소득 계산시 비용으로 차감되지 아니하는 항목) 및 건축 설치 용역
- 수입재화의 국내반입

□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 사업승계에 따른 고정자산, 무형자산, 기타 자산의 양도
- 비영리단체에 대한 자산 양도로서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것
-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 양도
- 재산사유화에 따른 국유 주거용 부동산의 양도
- 수용, 상속에 따른 재산취득 및 무주물, 매장물의 취득
- 주택, 유치원, 회관, 요양소, 기타 사회문화적 시설과 도로, 전력망, 변전소, 가스관, 저수지 기타 유사한 시설물을 국가권력기관 및 지방정부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행위

(또는 당해 기관의 결정에 따라 그 목적에 맞게 당해시설을 운영하는 특수기관에 기부하는 행위 포함)

- 민영화 절차에 따라 반환되는 국영기업 또는 지방기업의 자산 이전
- 러시아연방법, 지방정부의 법령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용역을 당해 국가권력기관이나 지방정부 또는 이의 관할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의 당해 용역의 수행

□ 면세대상

-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의료장비,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이나 재활치료자용의 의료기 계장치, 안경(선글라스제외)
-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 미용성형제외)
- 여객운송용역(택시, 미니버스 제외)
- 취학 전 아동 보육시설, 대학 및 각급 학교, 의료기관의 매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
- 장의사의 용역, 장의용품, 묘비, 묘지관리
-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 복권, 동전(수집용 동전 제외)
- 주택 임대용역
- 출자지분 및 주식의 양도, 선도·선물·옵션 거래
- 가정용품 무상수리용역
- 교육용역

- 연방정부 및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등 문화예술단체의 용역
- 국가가 공인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종교적 목적의 재화와 용역
- 금융 및 보험용역
- 철금속 또는 비철금속 폐자원(scrap)
- 100루블을 초과하지 않는 광고목적의 재화와 용역

부가가치세율은 현재 18%이나, 수출재화에 대하여는 0%의 세율이, 그리고 식료품, 아동용품,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분기로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동안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2. 법인세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러시아법인 및 러시아 내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인 혹은 러시아 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되며, 과세 대상은 각 다음과 같다.

구분	과세대상
러시아법인	소득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
고정사업장을 둔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에서 창출된 소득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비를 차감한 금액
기타 외국법인	러시아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

과세기간은 1년이나 매 3개월 단위를 기준으로 계산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매월 선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과오납이 있을 경우 다음 선납세액의 납부 시 이를 조정한다. 선납세액은 매 월 28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1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는 익년 3월 28일까지 하여야 한다.

세율은 24%의 단일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3. 체납/과납부 시의 처리

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겨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과세당국은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법 상 인정되는 체납처분 방법으로는 납세담보, 납세보증, 가산금(Penalty), 은행계좌나 재산의 압류가 있다. 납세담보는 납세자 본인 혹은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해 민법상 담보제공 가능한 재산으로 제공된다. 납세자가 체납한 경우 법인 혹은 개인은 그 납세보증인이 될 수 있으며, 체납세액 및 가산금에 대하여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다.

세금체납자에게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여야 할 가산금 이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일일 중앙은행의 현행 재할인율의 1/300으로 한다. 다만 과세관청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은행거래가 중지되거나 재산이 몰수되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가산금은 계산되지 않는다. 납기연장이나 분납을 신청한 경우 추가되는 가산금에는 세액공제나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과다 납부한 세액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납세자가 향후 납부할 세액 및 체납세액과 상계되거나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환급된다. 상계 혹은 환급되는 세액은 법에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면 환급금 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세금이 과다 납부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세관청은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과다납부 사실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VIII. 기업결합 규제

1. 기업결합신고 의무

가. 기업결합 신고 의무

러시아연방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인수할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있다.

- 거래전 사전 신고가 요구되는 경우

인수하는 기업(계열사를 포함한다) 및 인수대상 기업(역시 계열사를 포함한다)의 전 세계 자산총액의 합이 러시아貨 70억 루블 이상이거나 전 세계 매출액의 합이 러시아貨 100억 루블 이상이고,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총액이 러시아貨 2억 5천만 루블 이상인 경우¹²

- 거래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인수하는 기업(계열사를 포함한다) 및 인수대상 기업(역시 계열사를 포함한다)의 자산총액의 합이 러시아貨 400만 루블 이상이고,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총액이 러시아貨 6천만 루블 이상인 경우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매매대상주식을 인수하기 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종결 후 45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에 대한 승인 여부는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되어야 하나, 러시아연방 독점규제청의 재량으로 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외국회사가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 경우, 인수대상 기업의 주소에 상관없이 모스크바에 소재한 러시아연방 독점규제청 중앙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50만 루블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나. 전략기업 인수 허가와의 관계

¹² 위 경우 외에 인수하는 기업 또는 인수 대상 기업 중 관련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35% 이상인 기업으로 등재된 기업이 있는 경우, 사전 신고 대상이다.

한편, 앞서 말씀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안보상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분야의 외국인 투자절차법”에 따라 전략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경우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동 허가 역시 러시아연방 독점규제청에서 관할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기업이 전략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전략기업 인수에 대한 허가과 기업결합 신고가 모두 완료되어야 하는바, 이 경우, 전략기업 인수에 대한 허가 신청과 기업결합신고를 동시에 러시아연방 독점규제청 중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의 접수가 이루어지면, 전략기업의 인수에 대한 심사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며, 만약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기업결합신청도 거부되게 된다.

2. 자연독점법에 의한 등록 의무

러시아 연방 자연독점법은 예컨대 항만 운영 등과 같이 관련 분야의 성격상 경쟁이 제한되는 분야를 자연독점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 자연독점법상 자연독점 행위를 영위하는 기업은 자연독점기업명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각 등록 업무에 대한 관할은 구체적인 역무에 따라서 달라지는 바, 예컨대, 항만을 통한 운송역무와 관련한 자연독점에 대하여는 러시아연방 관세청에서 규율하고 있다.

한편, 자연독점 기업에게는 개별 사용자에게 대한 용역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는 등(자연독점법 제8조 제1항) 일정한 제한이 부과되며, 이러한 법에 따른 제한 여부는 자연독점기업명단 등재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IX. 지적재산권 보호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산업디자인권의 보호

러시아법 상 특허권에 대한 보호는 2008년부터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4편에서 규율되고 있다. 러시아연방 민법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산업디자인권을 “특허권들”이라는 개념 하에 통합하여 규율하고 있다.

특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새로운 발명이라면 어느 발명에 대하여도 부여될 수 있으나, 인간복제, 배아세포를 이용한 발명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권이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권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해당 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 권한을 가진다는 것인데, 이러한 배타적 권리는 출원하여 등록하여야 부여되며, 그 기간은 출원 시로부터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 산업디자인은 15년 간 인정된다.

한편, 동일한 특허권들에 대하여 복수의 출원이 제기되었을 경우, 우선권은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복수의 출원자들이 공동으로 권리를 출원하는 경우, 그들 간의 권리 관계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계약에 따른다.

러시아 민법은 근로자가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직무상 행한 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에 대하여, 근로계약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해당 권리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신청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는 정부가 고시하는 최소 보상금 이상의 보상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특허권, 실용신안권, 산업디자인권에 대한 발명자로서의 성명표시권 및 저작권은 해당 근로자가 계속 보유하게 된다.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을 고안한 경우, 이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서면 통보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사용자가 배타적 권한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신청할 권한은 해당 근로자에게 귀속되게 된다.

2. 상표권의 보호

상표권 역시 2008년부터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4편에서 규율되고 있다. 상표권 역시 출원되어 등록되어야 그 시점부터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상표권의 보호 기간은 출원 시로부터 10년이며, 횟수의 제한 없이 계속하여 갱신될 수 있다.

상표는 도형, 문자, 색, 그림 및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순수한 색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도 등록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상표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상표권에 대한 법의 규율 내용은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3. 영업비밀의 보호

비공지의 기술 또는 영업상 정보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는 영업비밀로서 러시아 연방 민법전 4편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이러한 영업비밀 또는 노하우의 소지자는 동 정보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가지며, 이를 타인에게 라이선스 할 수도 있다. 만약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이를 지득하거나 공개할 경우,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4. WTO 가입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2011년 러시아는 WTO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가입 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약속의 일환으로 러시아정부는 러시아연방 특허청의 확대개편과 민간·군사 분야 지적재산권의 통합 보호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또한 2013년에는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지적재산권 중재재판소가 개설될 예정이다.

X. 분쟁해결

1. 러시아 사법제도의 개요

러시아의 사법제도는 상업 분쟁을 다루는 법원과 일반 민사, 노동, 형사 문제를 다루는 법원이 조직상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상업분쟁을 다루는 법원을 연방중재법원이라고 부르며, 81개의 1심 법원, 20개의 항소법원, 10개의 상고법원 및 연방최고중재법원의 구조로 되어 있다.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이 확정되게 된다. 확정된 1심 법원의 판결 또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 상고법원은 사실관계 및 증거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하며, 확정된 판결이 법률 위반인지 여부만을 제한적으로 심사한다. 상고는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판결이 선고된 후 2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한편, 1심 법원, 항소법원 또는 상고법원의 판결이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불복하고자 하는 판결 선고 후 3개월 내에 연방최고중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방최고중재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허가를 얻는 비율은 신청 건수 대비 2% 정도에 불과하다.

상업분쟁은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해결되는 편이며, 외국인에게 편파적인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2. 준거법 및 중재지의 결정

러시아 기업으로부터 주식 또는 자산을 인수하는 계약 등 러시아 투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재에 의하여 분쟁해결을 하도록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계약의 준거법 및 중재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나, 준거법을 러시아법이 아닌 다른 국가의 법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내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하여는 러시아의 강행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러시아연방 민법 제1213조에 의하면 러시아 내에 위치한 부동산과 관련한 계약에는 러시아법이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중재지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으나, 러시아 내에 위치한 부동산에 관한 분쟁은 러시아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3. 중재판정 또는 외국법원 판결의 집행

외국에서 행하여진 중재판정이나 외국 법원의 판결도 그러한 판결이 러시아의 강행법규에 반하거나, 판결 자체가 무효가 아닌 이상, 러시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집행을 위해서는 우선 러시아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집행의 승인은 해당 국가가 러시아 법원의 판결을 승인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 개별적으로 검토된다. 다만, CIS 국가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하여는 키예프 협약에 의하여 러시아 내에서의 일반적인 집행 가능성이 인정된다.

실제로, 2008년과 2009년 각 79건과 88건의 중재판결 또는 외국법원의 판결이 러시아 내에서 집행된바 있다.

Investment & Business Guide

해외진출 우리기업을 위한 카자흐스탄 투자 법제



카자흐스탄 투자 법제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개요

1992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수교가 이루어진 이래 올해로 거의 20년이 되었다. 우리 기업들은 카자흐스탄이 구 소련으로부터 독립하여 건국한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진출하였으며, 1992년 1천 1백만 달러로 시작한 양국간의 교역은 연 평균 두 자릿수의 기록적인 성장을 통하여 2008년 현재 8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전통적으로 카자흐스탄에 대한 직접 투자는 철, 금·은, 백금 등 광업 부문에 집중되었는데 2006년 이후 카자흐스탄의 건설 경기 활황에 따라 건설업 투자가 활기를 띠었고, 2008년 국민은행의 BCC 지분인수와 등과 같은 금융부분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교역 규모의 폭발적인 증대와 투자의 다변화에 따라 그 동안 우리 기업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하는 방식은 단순한 교역 파트너에서 이제는 M&A를 통한 현지 기업의 인수, 부동산의 인수, 그리고 직접 공장을 설립하여 투자하는 방식 등 매우 다양한 양태를 띠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역의 증대와 투자 방식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카자흐스탄법에 대한 연구는 기초적인 수준도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이 투자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을 편람식으로 다루고 있는 참고 자료는 물론 카자흐스탄법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카자흐스탄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의 시작 단계부터 구체적인 운영 단계에 이르기까지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실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투자의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부터 시작하여, 법인 설립 등 투자 구조에 대한 검토, 그리고 구체적인 투자의 실행 단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민사적 쟁점 및 노동법, 조세,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투자의 시간적 진행 단계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관련 주제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법령, 법원의 판례 등 문헌에 대한 광범위한 수집 조사를 통하여 작성되었다.

다만, 법령 및 판례에 대한 기존 문헌의 조사 정리만으로는 카자흐스탄 투자 시 다양한 법적 쟁점이 제기되고 해결되는 능동적인 Mechanism을 온전히 형상화하기 어려운 만큼, 실제 투자 사례를 통하여 제기되었던 쟁점과 이에 대한 자문 사례를 통하여 확인된 사항으로 보완하여 보다 입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카자흐스탄법의 해석에 대한 유수의 현지 로펌의 견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다 실질적인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외국인투자 규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는 2003년 발효된 “투자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2003년이전에는 “외국인투자법” 및 “외국인 직접투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투자법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투자법은 투자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제의 상세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투자에 앞서 미리 카자흐스탄 정부와 투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상세를 규정한 투자협정서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투자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유인으로 일정한 투자우대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세상의 우대조치, 통관의무 면제, 또는 국가의 현물무상공여의 형태로 지원될 수 있다. 투자우대조치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계획 및 자본조달계획 등을 첨부하여 정부에 신청하여야 하며, 제안된 투자활동이 카자흐스탄 정부가 정한 우선순위투자유형의 목록에 부합하고 최신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시설에 대한 투자 등인 경우에 한하여 허가될 수 있다. 투자우대조치의 부여가 결정되면 신청자와 정부가 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원 내역이 확정되게 된다. 만약 투자가 약정한 시기를 채우지 못하고 철회될 경우, 투자자는 기존 혜택에 의하여 감세된 부분의 세금을 납부할 책임을 진다.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책으로 카자흐스탄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개인 재산을 수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시장가치에 기반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투자법은 영업활동 및 과실송금 보장, 투자활동의 수행과 관련한 정보에의 접근 보장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III. 법인의 설립 및 기업법 개설

1. 주식회사

가. 의의

주식회사라 함은 자본금이 일정수의 주식으로 분할되어 있고, 사원인 주주들이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으나, 그 주식의 인수금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회사로서,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회사의 설립

(1) 설립절차

발기인들은 발기인총회의 결의로서 주식회사의 설립을 결의한다. 위 결의에는 회사 설립, 정관의 승인, 기관의 구성 및 선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의 발기인에 의한 설립도 가능하다.

주식회사는 카자흐스탄 법무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설립등기를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등기신청서
- 정관
-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 발기인총회 의결서
- 발기인 신원증명서
- 등록세 인지

회사의 정관은 반드시 공증되어야 하며, 다음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i) 회사의 정식, 약식 명칭, (ii) 주된 사무소, (iii)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iv) 주주총회의 소집, 준비, 운영에 관한 절차, (v) 이사회에 관한 사항, (vi) 회사 사업내역의 보고에 관한 사항, (vi) 회사의 해산에 관한 사항.

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법무부에 하는 등기 외에도 국가통계국과 세무서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법무부에 등기 시 모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일괄하여 처리된다.

(2) 자본금 및 지분의 인수

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은 주주들이 인수한 회사 주식의 액면가 총액이다. 설립 당시 최소 자본금은 50,000 탱기 이상이어야 한다. 단, 은행과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더 높은 최소자본금 규정이 적용된다.

설립자본금은 회사의 설립등기 후 30일 내에 모두 완납되어야 한다. 한편, 자본금의 납입은 현물로도 할 수 있는데, 지적재산권도 현물출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물출자를 할 경우 자산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독립적인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 주식

주식의 발행은 카자흐스탄 증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며, 발행된 주식은 국가주권등록소에 등록되어야 한다. 주식회사는 보통주 외에도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는데, 우선주의 비율은 총 주식수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카자흐스탄법은 보통주와 우선주 외에도 특수한 권리주를 인정하고 있다. 발기인총회에서는 이러한 권리주의 도입을 결의할 수 있는데, 권리주는 회사의 자본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도 가지지 않는다. 다만, 권리주의 보유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에 대하여 거부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를 통하여 경영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 주주의 권리

(1) 주주총회 의결권

주주총회는 정관개정, 조직개편, 자본의 변동 등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보통주식의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우선주식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다만, 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의결권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

(2) 배당 및 잔여재산분배 청구

주식회사의 주주는 배당청구권 및 회사 청산시 회사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을 갖는다. 우선주는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의 배분에서 보통주에 비하여 우선권을 가지나 의결권을 가질 수는 없다.

한편, 이익배당은 주식수에 비례하여 현금 또는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실행할 수 있다.

(3) 신주인수권

주주는 보유한 지분에 비례하여 신주 또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발행에 있어 인수권을 가진다.

(4) 주식의 처분 권한

주식회사의 주주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법은주식을 양도할 경우, 잔여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주주 간에 우선매수권 또는 주식의 양도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도록 합의한 경우에도 그러한 합의의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지 파트너와 합작법인을 설립할 경우,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합작파트너가 변경될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 회사의 청산

주식회사는 주주의 결의, 파산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해산될 수 있다. 회사의 해산이 결정되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위임한 청산위원회가, 파산의 경우에는 법원이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2. 조합

카자흐스탄법에 의하면 네 종류의 조합이 인정되고 있다: 합명조합, 합자조합, 유한책임조합, 부가책임조합.

위 조합은 모두 법인격을 지니나, 구성원의 책임 한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합명조합의 경우 모든 조합원이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반면에, 유한책임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출자한 한도 내에서 간접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합자조합은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 조합원과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이다. 부가책임조합은 조합원이 원칙적으로 출자한 한도 내에서 간접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나, 만약 회사의 재산만으로는 변제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설립 당시 정한 한도 내에서 출자 지분에 따라 추가적인 변제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조합은 조합계약서를 체결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다. 등기에관하여는 주식회사에 설명한 바와 같다.

합명조합과 합자조합의 경우 최소한 2인 이상의 조합원이 있어야 한다.

합자조합의 운영은 무한책임 조합원이 담당하며, 유한책임 조합원은 경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유한책임 조합원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한책임 조합원 전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유한책임 조합원은 회계연도 종료 6개월 전의 사전 통지로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바, 이 경우, 탈퇴 당시의 재무상황표에 따른 지분가치를 정산 받게 된다.

한편, 법인은 합명조합의 조합원이 되거나 합자조합의 무한책임 조합원이 될 수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회사의 지분에 대한 지분 참여가 가장 제한되는 형태의 회사로서, 사원(지분권자)의 수는 최대 50명을 넘을 수 없으며, 최소자본금은 10,000 루블이다. 지분을 자유로이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권리의 안정성이 있는 반면에 자유로운 지분의 회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외국인 참여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사원의 일정 부분 이상을 카자흐스탄인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규제도 없다.

3. 지점 설립을 통한 사업의 수행

카자흐스탄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 외에, 연락사무소, 또는 지점(즉, Branch Office)을 현지에 설치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Branch Office란 별도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지는 않으나, 정부에 등록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IV. 주요 민사법 개요

1. 재산권

카자흐스탄 헌법 및 민법은 사유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토지법은 토지에 대한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카자흐스탄 내의 토지를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으나, 일정한 경우 제한될 수 있다.

카자흐스탄 토지법은 토지 소유권 외에 토지에 관한 물권적 권리로 토지사용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토지사용권은 그 형태에 따라 영구토지사용권, 임시토지사용권, 양도 가능한 토지사용권, 양도 불가능한 토지사용권, 무상 토지사용권 및 유상 토지사용권으로 구분된다.

외국인은 영구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으나, 임시토지사용권의 경우 사용기간은 무상일 경우는 5년, 유상일 경우는 단기 5년, 장기 5년에서 49년까지 제공될 수 있다.

한편, 부동산에 대한 물권의 취득은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원칙적으로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2. 담보에 관한 권리

토지소유권 및 토지사용권은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외국인 또는 카자흐스탄 내 비거주자도 카자흐스탄 내 자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에서는 건물의 담보 제공 시 건물에 부속된 토지소유권 또는 토지사용권도 동시에 담보로 제공되어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담보 설정 외에 동산 및 주식, 또는 예금에 대한 담보 설정도 모두 가능하다. 주식 또는 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질권 설정 사실을 주식발행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록하거나 예금질권설정계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3. 계약법

카자흐스탄연방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계약의 주요한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계약 체결에 관하여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는 않으므로 계약은 반드시 서면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의 구두합의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로, 카자흐스탄 현지 기업인 간의 계약은 매우 단순한 형태를 띠는 것이 일반적이며, 많은 부분이 구두 합의에 의하여 보충되는 실정이다. 다만, 이러한 관행이 많은 경우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현지 파트너와의 계약 체결 시 현지 관행과 상관없이 상세한 계약 조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 노동법 및 인사관리

1. 외국인 고용의 특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발급한 고용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고용허가는 해당 외국인이 카자흐스탄에 입국한 후, 60일 이내에는 취득하여야 하며, 통상 4, 5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카자흐스탄은 매년 외국인 고용허가의 총수를 제한하고 있는바, 2010년의 경우, 카자흐스탄 경제인구의 0.75%로 총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다. 따라서, 고용허가 신청 시기의 외국인 고용 상황에 따라서 허가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위험이 있다.

고용허가는 최장 1년간 유효하며, 만료 시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고용허가는 지방정부가 발급하기 때문에 만약 해당 근로자가 고용허가를 발급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전근하게 되는 경우, 전근하는 지방정부에 따라서는 다시 고용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법인의 장이나, Branch Office의 대표에 대하여는 고용허가의 취득이 면제된다.

2.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가. 근로계약의 체결

카자흐스탄연방 노동법에 의하면,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근로계약의 의무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근무지
- 담당업무
- 근로 의무의 시작기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
-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

- 업무의 종류가 중노동 및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건의 특징, 보장 및 혜택
-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
-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
- 근로계약의 변경 및 종료 절차
- 상여금의 보장 및 지급절차
- 각종 사회보험에 대한 규정
- 근로계약 체결일 및 계약번호

한편, 사기·폭행·협박으로 체결된 근로계약, 부모 일방의 동의 없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카자흐스탄 노동법은 근로자가 2개 이상의 근무지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지는 기본근무지와 시간제 근무지로 구분된다. 시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시간제 근로계약인 취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나. 근로기간

근로계약에 계약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된다. 다만, 회사의 대표이사 등 집행임원과의 근로계약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카자흐스탄 노동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제공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내로 체결된 경우로서 계약기간의 만료 후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그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특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한 근로계약이나, 병가·출산휴가 중인 직원을 대체하기 위한 임시 근로계약도 허용된다.

다. 최저임금

카자흐스탄 노동법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최저임금은 국가예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참고로 2011년 기준 15,999 텡게이다.

라. 근로시간 및 휴가

카자흐스탄의 법정 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 주 40시간이다.

초과시간 근무에 대하여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1일 2시간(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1시간), 월 12시간, 년 12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자는 초과근무, 야간근무(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5배, 휴일근무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2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10일의 법정 공휴일¹ 외에, 연간 24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이 외에 가족의 경조사 등의 경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무급 휴가를 쓸 수 있다. 임신부의 경우 출산 전 70일, 출산 후 60일까지 출산 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보육 휴가를 가질 수 있다.

마. 견습제도

사용자는 채용한 근로자의 업무능력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견습기간을 둘 수 있다. 견습기간은 근로계약에 명시되어야 하며, 견습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견습기간 없이 채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견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견습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한 것을 판단되면, 사용자는 견습기간 종료 7일 전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편, (i) 중등 또는 고등교육과정의 이수 후 최초로 해당 전문직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가거나, (ii) 장애인, (iii) 계절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견습기간을 두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¹ 한편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게 되면, 법정 공휴일의 다음 날이 휴일이 된다.

3. 근로계약의 종료

사용자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 사용자의 해산 또는 파산
- 인원 감축
-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적격
-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1일 3시간 이상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경우
- 술, 마약, 아편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근무한 경우
-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안전규칙을 위반한 경우
- 근무지에서 절도 또는 손괴 등으로 실형을 받은 경우
- 기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의무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한 경우
- 취업 시 사용자에게 허위의 서류 또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다만,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이거나 유급휴가 중인 경우에는 해산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임산부, 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성 등에 대하여는 인원감축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한편, 인원감축을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계약 해지에 대하여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VI. 지하자원 개발관련 법제

카자흐스탄에서 지하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지하자원 개발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지하자원 개발권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의하여 부여하나, 다음의 경우 직접 협상에 의하여 취득할 수도 있다.

- 이미 탐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지질조사로 광상을 발견한 경우
- 탐사를 목적으로 한 지하설비의 건설 또는 운영
- 국영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입찰은 공개입찰 또는 제한적 입찰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카자흐스탄 정부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다. 입찰의 신청기간은 최저 1개월, 입찰 예고는 최저 3개월, 심사기간은 15일 이내에 이루어 져야 한다.

낙찰자가 결정되면, 에너지자원부의 최종심사를 거쳐 지하자원 개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최종 심사 전 환경심사 등 각 관계정부 기관의 개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하자원 개발권의 행사 기간은 지하자원 개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하자원 개발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나, 모두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이는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지하자원 개발권을 보유한 기업이 이를 양도하거나, 해당 기업의 주식이 처분되는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하여 우선취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가격은 다른 구매자가 제시한 기간 및 조건보다 매도인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

2007. 10. 카자흐스탄 지하자원개발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 법에 의하면, 정부가 기 체결된 지하자원 개발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자원개발자가 이러한 변경을 거부할 경우, 당해 계약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주의를 요한다.

한편, 2008. 12. 지하자원개발법의 개정으로 생산물분배협약 제도는 폐지되었다.

VII. 조세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 용역 등의 판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 과세대상

- 상품(서비스 및 용역)판매, 담보물의 매각, 배상계약 또는 계약갱신에 따른 상품(인적 용역 결과물, 서비스제공)의 인도, 재산상의 권리의 양도
- 재화의 현물출자
- 리스계약에 따른 재화의 이전
- 동일한 기업의 지점 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단, 각 지점이 독자적으로 세무등록이 된 경우에 한한다.
- 지적재산권의 양도. 회사에 현물출자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 근로의 제공

□ 면세대상

- 정부의 승인을 얻은 물품의 수입 행위
- 금융 및 보험용역
- 주택임대 용역

- 지하자원 탐사, 사회간접자본 제공 용역
- 의료장비, 의약품, 장애인용품
- Minimum Calculation Index (2011년 현재 1,512 탱게)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광고 목적의 재화와 용역

부가가치세율은 현재 12%이나, 수출재화나 국제 운송 용역에 대하여는 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분기로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동안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고, 25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한다.

2. 법인세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카자흐스탄법인 및 카자흐스탄 내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인 혹은 카자흐스탄 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되며, 과세 대상은 각 다음과 같다.

구분	과세대상
카자흐스탄 법인	소득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
고정사업장을 둔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에서 창출된 소득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비를 차감한 금액
기타 외국법인	카자흐스탄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

카자흐스탄에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 법무부에 설립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때에 자동으로 세무 등록이 이루어 지며 별도로 세무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과세기간은 1년이나 매월 선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과오납이 있을 경우 과세기간 말에 이를 조정한다. 선납세액은 매월 25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1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는 익년 1월 20일까지 하여야 한다.

세율은 현재 20%의 단일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3년 17.5%, 2014년 15%로 감축될 예정이다.

VIII. 기업결합 규제 및 공정거래법

1. 기업결합 신고 의무

다음의 경우 카자흐스탄 반독점청에게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한다.

-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 카자흐스탄 기업의 지분을 25% 이상 인수하는 경우
- 기업의 운영이나 지배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 경우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총액이 Minimum Calculation Index (2011년 현재 1,512 텡게)의 200만 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거래 기업 중 하나가 카자흐스탄 정부가 고시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항할 경우에는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만약 사전신고 대상임에도 반독점청의 허가 없이 거래를 진행한 경우, 해당 거래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이 경우, 기업결합으로 신설된 기업은 해산되어야 한다.

2.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카자흐스탄 경쟁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상표와 표장의 부정사용 행위
- 다른 제조업자의 상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다른 제조업자의 제품의 외형을 모방하는 행위
- 경쟁 사업자를 비방하는 행위
- 고의적으로 사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는 행위

- 끼워팔기
- 공급업자로 하여금 다른 경쟁사에 공급거부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경쟁사와의 계약을 파기하도록 종용하는 행위
- 공급업자 또는 구매업자 직원에 대한 매수 행위
- 다른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경우 반독점청은 법률에 반하는 계약의 파기 또는 변경 등 법률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IX. 외국환 및 수출입 규제

1. 외국환거래 신고

외국인이 카자흐스탄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인수 금액이 미화 300,000 달러를 초과할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에 등록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 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중앙은행에 등록
- 지분의 10% 미만을 취득하는 경우: 중앙은행에 통지

2. 수출입 규제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가안전보장,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 및 국제 관계 안정 등의 목적으로 무기, 핵물질, 군용 물자 및 이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및 물자의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제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제품의 수입 정지를 포함한 자국시장보호방안을 공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① 수입 증가량, ② 수입 증가 제품의 카자흐스탄 내 시장 점유율, ③ 카자흐스탄 내에서의 가공 여부, ④ 카자흐스탄 제조업자의 해당 제품 생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이 카자흐스탄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고, 수출로 인하여 해당 제품의 시장 점유율에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장기적으로는 카자흐스탄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일부 가공을 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X. 지적재산권 보호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산업디자인권의 보호

지적재산권의 등록 및 보호에 관한 권한은 카자흐스탄 법무부 산하 지적재산권 위원회에서 관할한다.

특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새로운 발명이라면 어느 발명에 대하여도 부여될 수 있으며, 지적재산권 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을 가진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산업디자인권의 가장 큰 특징은 해당 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 권한을 가진다는 것인데, 이러한 배타적 권리는 출원하여 등록하여야 부여되며, 그 기간은 출원 시로부터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5년(만료 후 3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산업디자인은 10년(만료 후 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간 인정된다.

2. 상표권의 보호

상표권 역시 출원되어 등록되어야 그 시점부터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상표권의 보호 기간은 출원 시로부터 10년이며, 횟수의 제한 없이 계속하여 갱신될 수 있다.

상표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여하는 것이 가능하나, 역시 지적재산권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한편, 상표와 표장을 부정사용 하는 경우 상표법의 위반이 됨과 동시에 카자흐스탄 경쟁법 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반독점청의 규제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Investment & Business Guide

해외진출 우리기업을 위한 우즈베키스탄 투자 법제



우즈베키스탄 투자 법제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개요

1992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수교가 이루어진 이래 올해로 거의 20년이 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10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풍부한 천연 자원의 보고임과 동시에 20만 명이 넘는 고려인들이 거주하는 중앙아시아 최대 고려인 거주국으로서 구 소련으로부터 독립하여 건국한 시점부터 우리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어 왔다. 현재 아랄해 석유 해상광구에 생산물분배협정이 체결된 것을 비롯하여 석유, 천연가스, 기타 광물자원에 대한 다수의 공동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외에도 건설업, 섬유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 대한 직접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0년 한국산업은행이 RBS Uzbekistan을 인수하는 등 금융부분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의 투자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즈베키스탄법에 대한 연구는 기초적인 수준도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이 투자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을 편람식으로 다루고 있는 참고 자료는 물론 우즈베키스탄법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의 시작 단계부터 구체적인 운영 단계에 이르기까지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실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투자의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부터 시작하여, 법인 설립 등 투자 구조에 대한 검토, 그리고 구체적인 투자의 실행 단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투자의 시간적 진행 단계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관련 주제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법령, 법원의 판례 등 문헌에 대한 광범위한 수집 조사를 통하여 작성되었다.

다만, 법령 및 판례에 대한 기존 문헌의 조사 정리만으로는 우즈베키스탄 투자 시 다양한 법적 쟁점이 제기되고 해결되는 능동적인 Mechanism을 온전히 형상화하기 어려운 만큼, 실제 투자 사례를 통하여 제기되었던 쟁점과 이에 대한 자문 사례를 통하여 확인된 사항으로 보완하여 보다 입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 법의 해석에 대한 유수의 현지 로펌의 견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다 실질적인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외국인투자 규제

1. 외국인의 지위

우즈베키스탄에서 정의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과 같다.

- 외국 정부, 외국의 행정 및 지역 단위 기관
- 국가 간 또는 국제공법 주체 간 협정 또는 기타 계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기구
- 외국 시민, 무국적자, 해외에서 영구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시민인 개인
- 해외 법률에 따라 설립 및 활동하는 법인을 비롯한 기타 형태의 모든 회사, 기구 및/또는 협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외국인투자 보장법 등으로 과실송금, 자국에서 사업활동 수행에 대해 내국민대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혜택, 불리한 법률변경에 대한 보호, 사유화 참여 보장 등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국제조약 실현 보장에 따라 국적, 거주지, 경제활동 수행 장소, 투자국, 투자자의 모국, 종교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할 수 없다.

동 법령보다 늦게 발효된 우즈베키스탄 법령이 투자조건을 악화시킬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시점부터 10년 간 투자 당시의 효력이 지속된다. 각 부서의 법령 및 법규는 그 집행이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인 투자에 손실을 초래할 경우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또, 외국인 투자자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투자조건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법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외국인 투자법

가. 외국인 투자의 법적 기본과 절차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투자법에 의하면 공화국 영토 내 외국인 투자의 법적 기본과 절차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외국인 투자법 제1조)한다.

-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경제 발전 및 세계경제시스템 통합에 공조한다.
- 해외 금융, 유형, 지적 및 기타 자원, 최신 외국기술 유치 및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외국인 투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영리활동과 기타 법령에 따라 금지되지 않은 활동 객체에 투자한 모든 형태의 유형 및 무형 자산과 지적재산권을 포함해 이에 대한 권리 및 외국인 투자를 통한 취득물을 말한다.

동 법률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영리활동과 기타 활동객체에 대한 재투자로 출자한 취득물은 이익, 이자 및 배당, 로열티, 대리점 수수료, 기술지원비, 유지보수비 및 기타 대가지불 등의 비용을 포함해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로 취득한 모든 자금을 말한다.

나. 외국인 투자의 형태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 형태의 투자활동이 가능하다.

- 법인 및/또는 개인이 합작 설립한 회사, 은행, 보험회사, 기타 기업의 법정 자본금과 기타 회사 재산에 지분 참여
- 외국인 투자자에게 귀속된 회사, 은행, 보험회사, 기타 기업 설립 및 개발
- 우즈베키스탄 거주자가 발행한 장기 채권을 비롯한 주식, 기타 채권, 재산 획득
- 천연자원 탐사 및 채굴, 개발, 사용 등 양여 획득
- 매매물건 및 서비스 대상물, 회사가 위치한 토지에 대한 주거공간에 대한 소유권 획득과

토지와 천연자원의 소유 및 이용권(임대) 획득

- 저작, 특허, 상표, 노하우, 영업권, 회사명칭, 실용신안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투자

다. 외국인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는 1998년 발효된 “외국인 투자법”과 “외국인투자 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법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단, 우즈베키스탄 국제조약에 대해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령과 상이할 경우 국제 조약 규정이 적용된다.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활동의 수행을 위한 계약체결권 - 투자 및 그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하거나 소유, 사용 및 처분할 권리 - 신용 및 대출의 형태로 재정을 충당할 권리 - 현지 화폐를 사용할 권리 -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소유 재산 및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 - 수용 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준수 의무 - 납세의무 - 투자계획에 대해 공중보건, 위생, 환경 기타 조건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을 의무 - 국가 또는 지방의 기관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불법적인 영향을 행사하지 않을 의무

우즈베키스탄법은 외국인 투자를 외국인 투자의 비중이 지분 또는 수권자본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참여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이 중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규상의 보장 및 혜택은 외국인투자기업만이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되면 자체생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라 허가 없이 상품을 수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관세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외국인투자자 또는 그 고용인인 외국인의 개인적 필요에 대해서도 관세의무가 면제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투자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프로젝트들에 대해 자본 투자를 실행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등록 이후 7년 간 이윤세가 면제된다. 설립자본금이 백만 달러 이상이면 설립자본금에서 차지하는 외국자본의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의 이윤세는 16%로 다른 기업들의 18%에 비해 낮다.

주요 투자우대조치 내용

해당조건	세금혜택
납입자본 30% 이상 외국인지분	기업이윤세 25% 적용
납입자본 30% 이상 외국인지분(50~100만 달러 투자)	기업이윤세 20% 적용
납입자본 30% 이상 외국인지분(100만 달러 이상 투자)	기업이윤세 16% 적용
납입자본 30% 이상 외국인지분, 수출 또는 수입대체 기업	2년간 이윤세 면제
생산품의 25% 이상 아동용품인 외국인기업	5년간 이윤세 면제, 2년간 이윤세 절반면제
수권자본 50% 이상 외국인지분인 기업	재투자분 만큼 이윤세 면제
수권자본 50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 기업	재산세 면제
외국인투자 생산기업	2년간 토지세 면제
외국인투자 생산기업 현물출자용	반입설비 부가가치세 면제
외국인기업 및 종업원 자체용도	물품 수입관세 면제
생산의 50% 이상 (경화수출기업주)	재산세 감면

주: 경화수출기업에 면화, 석유 및 가스제품, 전력, 금속 등 주요 수출분야는 제외

자체 생산제품을 경화를 받고 수출하는 비중이 총판매고의 15~30% 이상인 수출업체들에 대해서는 설정된 이윤세에서 30%가 인하되고, 수출비중이 총판매고의 30%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설정된 이윤세의 절반이 인하된다. 수출지향 제품과 수입대체 제품을 생산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대해서는 지불해야 할 이윤세, 부가가치세 및 토지세가 2년간 유예된다.

그러나, 외국인투자회사에 대한 조세혜택은 카라칼팍스탄 공화국, 쥐작주, 카쉬카다린주, 사르다린주, 수르한다린주, 호레즘주, 나보이주, 나만강주, 페르간 주와 같은 우즈베키스탄의 특정지역에 투자할 경우 적용된다(대통령령 제3594호 제1항).

3. 외국인투자 보호법

수용, 분쟁해결절차, 이익금의 본국 송금 등 외국인투자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 투자 보호법에서 규율 되고 있다. 이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불리한 입법으로부터의 보호

외국인투자 보호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법제가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에 대한 보호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법행위도 그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나 투자 자본에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 소급효를 지니지 아니하며, 후속 입법에 의해 투자조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투자일로부터 향후 10년간 투자시점의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투자조건이 악화란 소득세율의 인상, 과실송금의 제한, 투자액에 대한 새로운 수량제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 제한규정의 도입 등을 의미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자가 불리하게 개정된 신법의 적용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무방하다.

나. 수용의 제한

외국인투자자의 자산은 자연재해, 긴급상황, 전염병, 유행병의 경우 예외적으로 내각의 결정에 의하여 국유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용은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수용의 목적, 규모, 수용 자산의 가치평가, 보상금의 액수, 집행절차에 대해 의의가 있을 경우 소송 및 중재의 형태로 이를 다룰 수 있다.

다. 이익금의 송금 보장

외국인투자자는 법률에 규정된 세금과 기타 납부금의 납입을 완료하였다면, 외국으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단, 채무초과, 파산에 따른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경우, 투자자의 범죄행위가 있었던 경우 또는 법원의 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송금이 제한될 수 있다.

4. 외국인 투자의 규제

가. 투자진출 제한분야

방위산업, 내무부 및 국가보안위원회 산하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참여 및 기업의 신규 설립 등)가 제한된다. 그러나,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의 경우에도 특정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투자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허가취득을 위해서는 1) 신청서 2) 정관 3) 투자허가 신청 수수료 납부증명서 4) 기타 개별기관에서 정한 서류 등을 관련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100% 외국인 소유의 회사 설립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합작투자 형태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분제한이 일반적이다. 통신, 운송부문에 대해서는 49%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운송부문 및 전략적으로 중요한 원자재 개발 산업 등은 정부가 특별관리 한다.

나.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 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세제 및 비세제 특혜를 제공하고 있지만, 1) 초기 자본금 15만 달러 이상, 2) 설립자 중 하나가 외국법인이나 개인, 3) 외국 투자자본이 3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외국투자기업으로 분류하여 혜택을 주고 있다.

다. 국산화 의무 및 수출의무

일반적인 규정은 없고, 개별업체에 대한 투자허가 발급 시 동 요건을 회사별로 규정하는 사례가 많다.

라. 부동산 취득 제한

2006년 7월 토지사유화에 대한 대통령령이 공포되었고, 동령에 의거 2007년 1월 1일부터 건물 또는 기타 구조물을 구입할 경우, 동 부동산이 위치한 대지의 점유권 및 사용권 이전이 허용되었다. 외국인은 각종 시설 및 토지의 영구 또는 임시 차용이 가능하지만, 토지의 경우 내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토지법 제24조) 임차기간은 통상 10년이다.

III. 법인의 설립 및 기업법 개설

1. 주식회사

가. 의의 및 종류

주식회사라 함은 자본금이 일정수의 주식으로 분할되어 있고, 사원인 주주들이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으나,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회사로서,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러시아에서와 같이 개방형 주식회사와 폐쇄형 주식회사로 구분된다. 개방형 주식회사는 주식의 양도가 자유롭고, 주주의 수에 제한이 없으나, 반면에 폐쇄형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는 주식회사이지만, 사원 수가 50인 이하로 제한되고 주식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다른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유한책임회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 주식 및 자본

주식의 발행은 우즈베키스탄 증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며, 발행된 주식은 국가주권등록소에 등록되어야 한다. 주식회사는 보통주 외에도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는데, 우선주의 비율은 총 주식수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주식의 액면가는 100 솜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은 기명식과 무기명식으로 발행될 수 있는데, 폐쇄형 주식회사의 경우 기명식 주식만 허용된다.

개방형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은 미화 50,000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폐쇄형 주식회사의 경우, 월 최저임금의 200배를 초과하여야 한다. 인수된 자본금은 회사설립 등기 후 1년 내에 완납되어야 하며, 주식의 인수는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출자도 허용된다.

한편, 주식회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및 배당을 요구할 권한이 없으며, 취득 후 1년 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만약 1년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액수만큼 감자를 하여야 한다.

다. 지배구조

주식회사의 기관은 주주총회, 감독위원회, 이사회, 감사회의로 구성된다. 이 중 주주총회는 최고 경영 기구로서,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다. 주주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되며, 재량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주총회의 의결은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나, 주식회사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는 의결권의 75%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야 한다.

감독위원회는 이사회의 감독기관으로서 우즈베키스탄법에 의하면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감독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을 경우 설립 취소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사회는 감독위원회의 감독 하에 회사의 일상 경영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감사회의는 주주총회, 감독위원회 또는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위원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감독위원회 및 이사회의 구성원은 감사회의의 구성원을 겸직할 수 없다.

2. 유한책임회사

가. 특징

1인 또는 수인이 설립인이 될 수 있고, 지분으로 구분된다. 사원은 출자한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게 된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회사명에 반드시 회사의 형태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유한책임회사의 최소자본금은 월 최저임금의 50배를 초과하여야 한다.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1인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으로 되어 있는 자는 또 다른 1인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유한책임회사는 50명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될 수 없다. 사원이 50명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1년 이내에 주식회사로 전환해야 한다.

다. 사원의 권리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고,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도 탈퇴할 수 있다.

라. 설립계약서

1인 회사인 경우 설립계약서는 요구되지 않고, 정관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1인 이상의 경우 설립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설립계약서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법무부에 등록을 해야 하며, 법무부에 등록한 때로부터 변경 내용에 효력이 생긴다.

마. 설립자본금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설립자본금은 월 최소임금의 50배 이상이어야 한다. 지분은 자본금의 납입 비율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설립자본금은 등기 시 설립계약서 등에 명시된 금액의 30% 이상 납입되어야 하고, 등기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자본금은 금전 및 현물로도 출자가 가능하고, 증자는 사원총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다.

바. 지분의 양도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들에게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원들의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매각은 정관에서 금지하지 않은 경우 양도 또는 매각할 수 있다. 한편, 다른 사원들은 제안된 금액으로 제3자에 대하여 지분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진다. 사원은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원들에게 가격 등을 표시하여 매각의사에 대해 통보를 해야 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1월 이내 매각의사가 없으면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러한 통보 절차 없이 지분을 매각한 경우 다른 사원들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판을 통하여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지점설립을 통한 사업의 수행

가. 외국인투자 형태

영업행위를 하는 합작회사(Joint Venture), 지사(Branch Enterprise) 및 외국회사(Foreign Private Company)와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로 구분한다. 지사는 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립되며, 동일한 설립규제(최소 자본금)를 적용받으며, 대표사무소는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법인의 형태로는 합작기업(Joint Stock Company), 유한 및 무한책임회사(Liability Company), 유한 및 무한 책임조합회사(Business Partnership) 등이 있다.

나. 외국인회사의 진출 방법

외국인 회사의 진출 시, 15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투자자 중 최소 1인 이상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지분이 전체의 30% 이상 차지해야 한다. 상기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도 투자는 가능하지만,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지 않고 우즈베키스탄 국내 법인과 동일하게 주, 시, 구 등의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 1) 외국인 100% 지분 보유 신설회사 설립
- 2) 우즈베키스탄 기업 또는 개인과의 합작회사 설립
- 3) 민영화 프로그램을 통한 경매 및 입찰에 참여해 기존 기업의 지분인수
- 4) 주주와의 직접 교섭 또는 주식시장에서 지분 매입을 통한 기업지분 인수
- 5) 지사
- 6) 기타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

단, 외국인 투자 기업이 2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내각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국영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국가재산위원회의 사전 결정이 요구된다.

다. 인가절차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내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든 형태의 법인 및 기업으로 정관에 명시된 기업목적에 부합되는 모든 종류의 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100% 외국인 소유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모든 법인은 등기를 해야 하고, 등기 관련 정보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포함되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민법 제44조). 하지만, 민법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법인등기부등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법적 공백 상태이다.

라. 법인의 설립절차

법무부 신고, 은행신고 및 자본금 납입, 투자기업 등록, 회사 인장 제작 및 등록, 통계국 신고, 대외경제부에 무역업 등록, 세무서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1) 법무부 신고

외국인으로서 우즈베키스탄에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법무부에 투자자와 간략한 사업개요, 예상자본금 규모, 합작투자 여부 및 지분율을 기재한 투자신청서를 투자기업의 정관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의 재량 범위 내에서 투자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서면으로 승인한다. 투자금액이 2천만 불 이상으로 내각결의가 필요하거나 다른 정부 부서와 사전협의를 필요한 경우 동 절차를 걸쳐 승인여부를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전달한다.

법무부에는 변호사 등의 전문가 그룹(Republican Consultative Center)을 구성하여 은행 접촉 이전에 투자자들의 자문을 받거나 외부 변호사를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투자 신고 및 법인 설립 전과정의 자문 및 대행비는 1,200~1,500달러 내외이다.

2) 은행신고 및 자본금 납부

법무부에서 투자를 승인한 경우, 법무부에서는 투자기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한 은행 및 계좌 번호를 지정해준다. 은행에서 투자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해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는 (i) 회사의 정관, (ii) 투자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의사록(법인: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iii) 현지 대표의 여권 및 거주 등록 증명서, (iv) 신규회사 경리담당 책임자의 여권이 필요하다.

등록세는 합작기업, 자회사 및 지점의 경우 (법정최저 임금*5)+500달러, 외국인 투자지분 100%인 기업, 자회사 및 지점의 경우 2천 달러를 납부해야 하며, 법무부의 서류 보완 요구에 따른 재등록 시, 그리고 정관변경 시 처음 납부한 등록세의 20%를 추가납부 해야 한다.

또한, 자본금을 송금할 경우 자본금 입금 후 은행에서는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발부한다. 현물 출자의 경우에는 세관에서 현물출자한 물건이 도착한 후 투자대상물의 적정가격을 산정하여 투자자가 신고한 투자금액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현물출자 확인서를 발부한다.

지적재산권 또한 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데, 이때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우즈베크 과학기술

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동 위원회에서 무형재산 평가증명서를 발급해준다.

3) 투자기업 등록

투자기업을 등록할 때, (i) 등록신청서, 등록할 기업의 정관, (ii) 투자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의사록(법인: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서), (iii) 자본금납입 증명서, (iv) 현물출자 확인서 또는 무형재산 평가 증명서, (v) 등록금 납부 증명서, (vi) 투자 모기업의 등록 증명서(우즈벡 대사관 확인필요), (vii) 투자 모기업의 주거래은행 추천서(우즈벡 대사관 확인필요), (viii) 기타 정부기관의 특별허가가 필요한 산업의 경우 허가증이 필요하다.

4) 회사인장 제작 및 등록

기업등록을 마치고 영업행위를 개시하기 위해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회사 인장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장 등록에 앞서 인장 제작은 경찰서의 인장 등록증명서 교부 후 인장을 제작하는 회사에 제작을 의뢰하게 된다. 우즈베키스탄에는 많은 인장 제작회사가 영업 중에 있으며, 경찰처가 추천을 해주기도 한다. 제작기간은 통상적으로 1주 정도가 소요되며 10달러 이내로 제작 가능하다.

인장 등록 절차 시 (i) 신청서(해당기업 Letter Head에 회사인장 등록을 요청하는 내용 기재), (ii) 인장관리자 지정 확인서(인장관리 책임직원의 서명), (iii) 인장의 도안(실물크기)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5) 통계국 신고

거시경제부 산하의 지역 통계국에 회사를 등록할 시 10 달러의 현지화와 회사 개요를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통계국에서는 10일 이내에 등록증명서를 교부해준다.

6) 대외경제부에 무역업 등록

(i) 신청서(회사의 Letter Head에 무역업등록에 대한 신청내용을 기재하고, 회사인장으로 날인), (ii) 품목 명세서(수출·입하고자 하는 품목내역), (iii) 등록 신청서(10달러 이내의 현지 통화)가 필요하며, 타슈켄트에 소재한 기업은 3일 이내, 이외의 지역은 4일 이내에 등록절차가 완료된다.

7) 세무서 신고

상기 절차가 종료된 후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9자리로 구성된 납세자 번호가 부여되고 세무서 등록증을 교부 받게 된다. 세무서에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i) 신청서(회사의 Letter Head에 세무서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회사의 공식인장으로 날인), (ii) 회사의 정관, (iii) 투자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의사록(법인: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서), (iv) 법무부 회사 등록 확인서, (v) 대외경제성의 무역업 등록증(무역업의 경우)이다.

마. 연락사무소 개소에 필요한 서류

연락사무소 등록은 대외경제성의 인가(Accreditation)부서에서 담당하며, 서류제출 후 10일 이내(등록비용은 1,170 달러)에 처리된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는 Informservice 등 3곳의 대행기관이 있어 대행업무를 처리할 경우 서류만 완비되면 2일 내에 등록절차가 완료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500불 정도 지불해야한다.

회사 등기부등본, 정관, 연락사무소 소장이 특정된 연락사무소 개소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사무소소장 위임장, 연락 사무소 규정이 필요하며, 이 외에도 모기업 주거래 은행의 추천서한, 우즈벡 기업 추천서 또는 국제적 인지도가 있는 기업(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대우, 삼성 등)의 추천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모든 서류는 우즈벡 또는 러시아어로 작성 및 번역되어야 하며,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공증이 있어야 한다. 한국 주재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번역의 정확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동 서류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바. 외국인 투자기업의 구조조정과 청산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즈베키스탄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구조조정되거나 청산될 수 있다.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경우, 기업 등록 이후 1년 이내에 설립서류에 규정된 법정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이때 설립서류에 규정된 기간 내에 법정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은 법령에 규정된 최소 법정자본금 범위 내에서 실제 조성된 금액까지 법정자본금을 축소하는 방법과 다른 법적 형태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기업을 청산할 때, 설립서류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잔여자산은 기업자산에 대한 사원의 지분비율에 비례해 외국인 투자기업 사원에게 분배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탈퇴할 때, 또는 해당기업을 청산할 때, 시장가격에 기초해 현금 또는 물품 형태로 기업자산의 지분을 반환 받을 권리를 갖는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구조조정과 청산의 경우 노동계약이 종료된 직원들에게는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도록 한다.

IV. 주요 민사법 개요

1. 재산권

국가재산관리위원회가 국유재산을 관리 및 국유자산매각을 통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및 보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국유자산의 매각, 국유자산매각시 최초가격 승인, 사유화금지목록 작성, 주식거래소 평가회사 및 평가사의 허가증 발급 등을 담당하고 있다. 관련 집행법률로는 사유화법이 있다.

우즈베키스탄 토지법에 따르면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본적으로 토지는 국가소유이다. 토지와 상가건물, 주택 등의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토지와 건물의 2중 소유구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2006년 7월 대통령령으로 “토지사유화”가 공포되면서 2007년 1월 1일부터 우즈베키스탄 내 법인들은 그들이 소유한 건물에 해당하는 토지와 인접지역의 토지를 사유화하게 되었다. 개인주택 관련 토지의 경우에도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사유화가 허용되어 현재 영구사용권 등의 권리를 가진 자가 소유 및 점유한 토지를 시장가격에 기초해 사유화할 수 있다. 또한 주택건설을 위해 판매할 경우, 해당 토지는 경매를 통해 사유화될 수 있다.

외국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회사 설립계약서 및 정관 사본
- 2) 사업자증명서 사본
- 3) 회사 등기부등본
- 4) 부동산 구입에 대한 결정이 있는 이사회 의사록(소유자, 매매금액, 구체적 매매 대상물)
- 5)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

토지소유권 이외에 법인은 법전 및 법규에 따라 항구적 소유권, 항구적 이용권, 한시적(일시적) 이용권, 임차권 등의 권리 형태를 가지며, 자연인은 종신상속소유권(우즈베키스탄 국민의 권리)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법인과 동일하다.

외국법인 및 외국인 자연인(외교관), 우즈베키스탄에서 신임을 받은 언론사 대표, 회사·기업 및 국제단체 상주대표부 직원, 외국인투자 기업에서 상주하여 근무하는 자 및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 상주하는 동시에 거주 증명서를 소지한 자의 토지소유권은 법률의 규정절차에 따라 주택과 주택이 위치한 토지를 함께 매도할 경우 발생한다.

2. 담보에 관한 권리

우즈베키스탄에서 토지는 국가재산으로 전 국민의 재산으로 간주되고 합법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호하고 우즈베키스탄 법규가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매, 증여, 담보, 교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임대한 토지의 경우 매매, 담보, 증여, 교환의 대상은 아니지만,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토지 임대권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다. 임차인은 동 법률 또는 임대계약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에 대한 임대권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재산과 재산권은 차입금 등 모든 형태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사용될 수 있다. 채무보증 수단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위치한 상가건물, 토지를 포함한 주거지, 건물, 시설물, 기계에 대한 재산권 및 기타 물권이 사용 가능하다.

이처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부동산은 물론 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한 담보설정이 모두 가능하며, 외국인 투자자 소유의 모든 재산과 재산권은 그 위치에 관계없이 외국인 투자자 채무 담보로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 계약법

우즈베키스탄 계약법에 따르면, 계약이란 민사적 권리와 의무의 성립, 변경 또는 종료에 관한 2인 또는 수인의 합의를 말하며, 시민과 법인에 대해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계약 당사자들은 법률 또는 채택된 채권에 계약체결 의무에 대해 명기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계약조건 내용은 법령에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들의 재량에 따라 정해진다. 또한 계약조건이 당사자 또는 임의규정에 의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들의 관계에 대해 적용되는 상관습에 의해 정해지며,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 당사자들의 합의로 그 적용을 취소하거나 그와 다른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우즈

베키스탄 민법 상 계약은 그 내용이나 본질적 특성상 당사자들이 달리 명시하거나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유상계약을 전제로 한다. 계약은 체결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당사자들에 대해 강제성을 갖는다. 기본적으로 법률이나 계약으로 당사자들의 채무 기간 종료를 명기할 수 있으나, 조건이 없는 계약은 당사자들의 채무 이행 종료 전 계약서에 정해진 시점 이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당사자들은 해당 위반에 대한 면책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계약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민법은 가계약에 명기된 조건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향후 재산의 양도, 용역 수행, 서비스 제공에 관한 본계약 체결을 규정하고 있다. 가계약은 당사자가 일정한 계약의 조건을 정해 놓고 향후 정해진 조건에 따라 계약(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만약 일방 당사자가 이러한 본 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법원에 본 계약 체결을 강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가계약의 양식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가계약은 대상과 그 밖의 본계약의 필수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가계약에는 당사자들이 체결해야 하는 본계약의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간이 가계약의 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본계약은 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체결되어야 한다.

가계약으로 명기된 채무의 경우,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 체결되지 않았거나 당사자 중 누구도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에 관한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종료된다.

V. 노동법 및 인사관리

1. 외국인 고용의 특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이민청이 발급한 고용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고용허가는 신청 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되며, 수수료는 월 최저임금의 10배이다. 고용허가는 최장 1년간 유효하며, 만료 시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한편,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허가의 취득이 면제된다. 대외경제투자무역부에서 개인별 인증카드를 발급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가. 근로계약의 체결

우즈베키스탄 노동법에 의하면, 근로계약의 의무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근무지
- 업무내용(직위, 구체적 수행업무 등)
- 근로 의무의 시작기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
-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

한편, 법률이 정하지 않은 해고 또는 징계의 사유를 추가적으로 합의하거나, 초과근무시간의 한도를 위반한 근로시간의 약정, 또는 근로자에게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물질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무효이다.

나. 최저임금

우즈베키스탄 노동법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최저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2009. 6. 현재 최저임금은 28,040 습이다.

다. 근로시간 및 휴가

우즈베키스탄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무형태는 주 5일제와 6일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주 6일제의 경우 하루 근로시간이 7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주 5일제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시간 근무에 대하여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2일간 4시간 1년에 12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자는 초과근무, 야간근무(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5배, 휴일근무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2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9일의 법정 공휴일 외에, 연간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이 외에 가족의 경조사 등의 경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무급 휴가를 쓸 수 있다. 임신부의 경우 출산 전 70일, 출산 후 56일까지 출산 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자녀가 2세가 될 때까지 보육 휴가를 가질 수 있다.

3. 근로계약의 종료

사용자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 사용자의 해산 또는 파산
- 인원 감축
-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적격
-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의 반복적인 고용의무위반
- 고용의무의 심각한 위반

VI. 주요 투자관련 법제

1. 지하자원 개발관련 법제

우즈베키스탄에서 모든 지하자원은 국유이므로, 지하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지하자원 개발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지하자원 개발권은 입찰 또는 수익계약에 의하여 부여될 수 있다.

지하자원 개발권은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는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카자흐스탄과 달리 생산물분배협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생산물분배협정(Product Sharing Agreement, 이하 “PSA”)이란 자원의 채굴 및 판매에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과 그 자원의 매장지를 관할하는 국가와의 사이에 체결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민간기업의 투자로 생산을 시작하되, 생산물의 일정 부분을 매각한 대금으로 투자에 대한 비용을 보전하고, 나머지 생산물에 대하여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투자 기업이 분배하도록 하는 약정을 말한다. PSA의 체결 당사자는 입찰에 의하여 결정하며, 계약기간, 생산물 분배의 조건, 계약의 해지 사유 등 구체적인 조건은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고로, 일반적인 법인세율이 35%임에 반하여 PSA 투자자는 10%의 특혜혜택이 제공된다.

2. 건축 및 건설 관련 법제

우즈베키스탄 국가건축건설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도시건설 법규 작성/승인
- 설계의 국가검수 및 관련 방안 작성/승인
- 도시건설 관련 기타 법령 작성/승인
- 국가 건축 및 건설 감독 수행
- 도시건설 규범, 국가표준, 건설작업 기술 및 건축자재 준수 여부 감독

- 건축표준화 업무수행 및 건축자재 인증화 수행(설계 라이선스, 감리 라이선스, 고층 산업 알피니즘, 작업수행 라이선스 발급 등)

우즈베키스탄 내 목적물, 건조물 및 구조물의 배치, 설계, 건축 및 운영에 대한 환경적 요건은 자연보호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토지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기술이 도입될 경우, 신규·재건되는 목적물, 건조물 및 구조물을 배치, 설계, 건축 및 운영할 경우 토지보호 대책이 시행되며, 토지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물의 배치는 법으로 규정되는 절차에 따라 토지 개량 및 자연보호 기관, 그 밖의 기관과 합의토록 한다.

경작지를 제외한 토지를 항구적소유권 및 이용권과 한시적(일시적) 이용 및 임대/소유권을 보유한 법인과 자연인은 토지법에 따라 당사자가 확보한 기업, 건물, 구조물, 건조물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건축, 철거, 개조할 권리를 가진다.

우즈베키스탄 법률은 법인의 건축부분 위법책임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건설부문위법 개념에 대해 거주지, 건물, 시설물의 기본계획, 배치도의 위반, 건물, 건축물, 시설물과 그 일부 또는 개별 구조 요소의 강도, 안정성, 견고성 및 파생 건자재, 구조물과 제품의 강도 수치의 저하와 상실을 초래하는 법인의 설계와 건축 및 건자재 생산 부문 국가 기준, 건축 법규, 기술 조건의 비준수, 건축물의 정해진 건축절차와 그 가동 승인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 상기 위반의 경우, 건설부문위법에 대한 책임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우즈베키스탄 내 설계, 건설 및 수리업에 종사하고 건자재, 구조물, 제품을 생산하고 건설부문 발주자가 되거나 발주자와 도급업자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법인은 건설부문 위법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형에 처한다.
- 법인의 처벌로 위법 제거 의무, 손해배상 의무 및 유죄 공무원의 훈시, 행정처벌, 민사 및 형사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다.

□ 건설계획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는 다음과 같다.

- 거주지, 기본계획과 배치도 및 역사유물지역의 재건축안, 건설 품질과 거주지역 조경, 소지구, 시 산업 구역, 농촌거주지,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건설 계획에 대한 위반은 최저임금의 70~100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 건설 부문 법률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는 다음과 같다.

위반사례	부과액
위반으로 건물, 구조물, 시설물, 그 일부 또는 개별 건축 요소의 강도 또는 안정성 수치가 상실될 경우	최저임금의 50~100배
위반으로 건물, 구조물, 시설물, 그 일부 또는 개별 건축 요소의 강도 또는 안정성 수치가 저하될 경우	최저임금의 40~80배
위반으로 건물, 구조물, 시설물, 그 일부 또는 개별 건축 요소의 견고성 수치가 저하될 경우	최저임금의 30~60배

이 외에도 전자재, 구조물, 건설관련 제품 생산 시 국가기준, 건축법규, 기술조건 위반에 대해 제품 판매가의 50%의 벌금이 부과된다.

3. 산림개발 관련 법제

도시 내 삼림지는 주민의 휴식 마련, 대기상태·도시의 보건위생 조건의 개선, 주민의 문화적·심미적 필요 충족, 물오염 및 공기오염으로부터의 도시지역의 보호를 위해 지정된다. 삼림지의 구성에 속해 있으나 식목이 점유하지 않는 필지는 운동장 조성 및 그 밖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토지법은 삼림펀드(제10장)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삼림펀드의 토지란 임업용으로 제공된 토지를 말한다. 도시 및 산업중심지 주변의 조림, 협곡 증대 금지, 보호림 및 녹지대의 조성을 목적으로 그 밖의 용지가 삼림펀드 토지의 구성으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전 가능하다.

또한, 자연보호, 건강증진, 휴양, 역사·문화적 용도에 따라 특별보호지역이 지정되며, 이러한 토지의 소속, 이용 및 보호 절차는 법률로 규정한다.

VII. 조세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된 주요 조세로는 법인세,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 개인 소득세 및 급여관련 납부액 공제, 관세 등이 있다.

1. 법인세

2007년 세제개혁으로 일반 소득세율은 종전의 12%에서 10%로 인하되었고, 영구조직을 통한 비거주자 법인 영업활동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된다. 경매 및 유흥업 종사 기업의 경우 35%, 상업은행은 17%가 적용된다. 산업부문과 과세대상 소득유형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제조품 매출액의 30% 이상 수출하는 경우 해당 법인세율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15~30%를 수출하는 경우 소득세 30%가 감면된다. 컴퓨터 장비, 소프트웨어 및 교육훈련 제조, 유통·서비스 기업의 경우 소득 세율이 5%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받는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수출기업, 아동 및 특정 문화 상품 생산기업은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과실송금시 10%가 추가 과세되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이윤을 창출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한다.

소득 형태	세율
배당금 및 이자	10%
보험료	10%
국제통신 및 화물 소득	6%
로열티, 임대료, 관리수수료 소득, 자문 비용 및 기타 소득	20%

무역업체는 제세 대신 총소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며, 총이윤을 기준으로 소재지, 수익성에 따라 15~50%를 부과해야한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도 제세(물품세 제외) 대신 통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해당여부가 결정되며 산업에 따라 5~25%가 부과된다. 농업기업은 제세(물품세 제외) 대신 소유 또는 사용토지에 대한 통합토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액은 토지의 질, 위치, 관개상황을 고려하여 내각에서 결정한다.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원천징수되며, 재화 및 용역 매출액, 수출 및 수입 매출액 전체에 대해 20%가 부과된다. 단, 정부에서 지정한 밀가루, 설탕 등 중요 식품에 대해서는 15% 부과하며, 무역업체는 소득세 납부시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에는 보험, 금융, 지적재산권, 의료서비스, 출판 서비스, 의약품 등이 해당된다.

3. 개인소득세

6개월(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은 외국인이라도 개인소득세 납부대상이 되며 법정 최소급여액(2003. 5월 월간 5,440솀)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소득세율은 물가상승에 따라 수시로 조정된다. 기업의 구체적 세율은 지역 행정당국이 결정한다.

과세 소득	세율
연간 법정 최소급여액의 5배 미만	13%
연간 법정 최소급여액의 5~10배 미만	22%
연간 법정 최소급여액의 10배 이상	32%

4. 체납/과납부 시의 처리

세무 신고는 회계연도의 기간은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로, 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2월 15일까지 세무당국에 재무제표를 제출 및 납세 신고하여야 한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법인의 대표사무소 및 외국법인은 익년 3월 25일까지 세무당국에 세금환급 신고를 해야 한다.

경제주체가 조세채무 등을 불이행할 경우 법원의 경정에 따라 경제주체의 결제계좌 등을 폐쇄한다. 미납 조세채무, 과징금 등 세무기관의 집행서류에 의거 노동관계 문제, 부양료, 저작권료, 생명 및 건강상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압류명령의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

납세자의 계좌에 현금이 있는 경우 조세 및 과징금을 국고에 납입하며 조세기관의 서면요청으로 계좌인출이 중지된다.

VIII. 기업결합 규제

1. 기업결합 신고 의무

우즈베키스탄법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 회사 발행주식의 35%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우즈베키스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만약 이러한 승인을 얻지 않고 거래를 진행할 경우, 그 거래는 무효로 간주된다. 우즈베키스탄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거래로 거래 당사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거래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관련 시장에서 65%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경우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된다. 단,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으로 위 기준을 낮출 수도 있다.

기업결합 신고의 처리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정 심의기간은 10일이나 통상 3~4주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내각의 결의

법률상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금융기관의 지분 인수 등 중요한 투자 거래의 경우, 사전에 투자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우즈베키스탄 내각의 결의를 신청하는 것이 관행이다. 참고로, 단순히 외국계 은행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도 내각의 결의를 신청한 사례도 있다.

내각에의 신청은 우선 관련 인허가 기관에 신청한 후, 관련 기관이 내각으로상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법에서 정해진 공식적인 절차가 아닌 만큼, 규정된 처리시간은 없으며 통상 수 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3. 자연독점법에 의한 등록 의무

우즈베키스탄 국가반독점청은 자연독점 주체의 활동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독점주체는 다음의 행위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반독점청에 동의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데, 국가반독점청은 신청서류 미비, 정보제공 불충분 등의 이유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 국가반독점청의 주요업무

1) 자연독점의 주체가 국가통제를 받고 있는 물품의 생산과 관련이 없을 경우, 해당 거래금액이 자연독점 주체 자본금의 10%를 초과할 때 자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또는 기본자산의 사용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래, 2) 자연독점의 주체가 국가통제를 받고 있는 물품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거래금액이 자연독점 주체 자본금의 10%를 초과할 때 자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기본자산 일부의 사용권을 양도, 3)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물량에 관한 계약의 이행, 물품 가격 형성 및 적용 절차 준수, 4) 자연독점 주체 설립, 조직변경 및 해산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IX. 지적재산권 보호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산업디자인권의 보호

산업재산권의 등록 및 보호에 관한 권한은 우즈베키스탄 특허청의 관할이며, 저작권의 등록에 관한 업무는 별도의 저작권관리청에서 관할한다.

특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새로운 발명이라면 어느 발명에 대하여도 부여될 수 있으며,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을 가진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산업디자인권의 가장 큰 특징은 해당 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 권한을 가진다는 것인데, 이러한 배타적 권리는 출원하여 등록하여야 부여되며, 그 기간은 출원 시로부터 특허는 20년(만료 후 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실용신안은 5년(만료 후 3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산업디자인은 10년(만료 후 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간 인정된다.

2. 상표권의 보호

상표권 역시 출원되어 등록되어야 그 시점부터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상표권의 보호 기간은 출원 시로부터 10년이며, 횟수의 제한 없이 계속하여 갱신될 수 있다.

상표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여하는 것이 가능하나, 역시 특허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X. 분쟁해결

1. 우즈베키스탄 사법제도의 개요

우즈베키스탄의 분쟁해결 기관은 헌법재판소, 일반법원, 경제법원, 중재원 등이 있으며, 단 중재원(2005년 6월 설립)은 사법기관이 아니다. 경제법원에서는 법인 관련 경제분쟁 등의 해결을 담당하고 법률에 의해 관할권이 부여된 사건을 재판하고, 중재원은 해당분야 전문가들로 구성, 단심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다.

〈 경제법원의 주요 분쟁해결 〉

- 법률에 따라 체결이 규정된 계약에서 이견에 관한 분쟁 또는 그 계약에 대한 이견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 경제법원으로 이송된 경우
- 계약 조건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에 관한 분쟁
- 소유권 인정에 관한 분쟁
- 의무사항 불이행 또는 부적절한 이행에 관한 분쟁
- 소유자 또는 기타 법적 점유자가 제기한 타인이 불법으로 점유한 재산청구에 관한 분쟁
- 점유 박탈과 관련이 없는 소유자 또는 기타 법적 점유자의 권리 위반에 관한 분쟁
- 손실보상에 관한 분쟁
- 명예, 인격, 명성 보호에 관한 분쟁
- 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권리와 법률로 보호되는 기관과 시민의 법적 이익을 훼손하는 국가 기관과 시민자치기관 법규의 무효 인정에 관한 분쟁
-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징수되는 집행문서 또는 기타 문서 집행의 부적절한 이행 인정에 관한 분쟁
- 국가의 등록 거부 또는 정해진 기간 내 국가의 등록 회피에 관한 분쟁
- 징수의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기관과 기타 기관이 시민과 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벌금 징수에 관한 분쟁(단, 해당 절차가 법률로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이익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제외)
- 법률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법령요건을 위반해 편입된 예산자금 반환에 관한 분쟁

중재법원은 기업 주체간 발생한 경제 분쟁 등 민사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다. 우즈베키스탄 내 상설 및 임시 중재 법원이 구성될 수 있는데, 국가권력기관이나 운영기관은 중재법원을 설립할 수 없고 중재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법원은 행정, 가정, 노동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할 수 없으며, 중재 협정일 경우 중재법원에서 심사될 수도 있다. 관할 법원의 심사 단계에 있는 분쟁에 대한 중재협정은 법원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채택하기 이전에 체결 가능하다.

중재협정은 서면으로 체결되고, 계약의 1) 부대조건 형태로 작성되거나 2) 개별협정 형태로 작성된다. 또한 중재협정의 경우, 중재협정 당사자들의 서명이 있는 서류에 서면 작성, 서신 교환 작성, 메일 등 협정의 확정을 확인하는 기타 통신장비를 사용해 의견을 교환했을 경우 협정체결로 인정한다.

〈중재법원의 분쟁해결 관련비용〉

- 중재판사 수입료
 - 중재심판 진행을 위한 물적 비용
 - 분쟁 심사장 도착 운임 등 중재판결 참여를 위해 중재판사가 지불하는 비용
 - 중재판사의 서면 및 물적 증거물 관찰 및 심사용 증거물 장소이동 비용
 - 전문가와 통역 지불에 대한 비용
 - 증인들이 지불하는 비용
-

분쟁사건 심사 후 중재법원은 중재법원 소속 중재판사의 다수결로 판결을 내리게 된다.

단, 중재법원 판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중재심사 당사자는 중재판결 철회 신청서를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동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중재법원은 판결 집행을 관할 법원의 분쟁심사 종료일까지 중단하게 된다.

2. 준거법 및 중재지의 결정

우즈베키스탄 경제소송법은 우즈베키스탄 법원에 제기된 관련 사안들에 대해 외국인 당사자는 우즈베키스탄인 당사자와 동일한 절차적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대외경제활동의 수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결하며,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를 협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준거법 및 분쟁해결의 장소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사법 규정 및 원칙에 준한다.

분쟁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분쟁을 우즈베키스탄의 법원에서 해결하기로 결정했을 경우에도 법원 판결 이전이라면 어느 시점에서든 국제중재판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제3국에서의 구속력 있는 중재가 배타적인 분쟁해결 수단임을 규정하는 계약 조항의 삽입을 선호하는 편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국가와 타국가 국민 간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 회원국으로 여러 국가들과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다수의 투자보장 협정 및 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특정 분쟁의 경우 동 협약에 따른 중재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

분쟁해결기관의 선정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국제조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분쟁은 투자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해서만 적용되며, 투자활동과 관련 없는 분쟁에 대해서는 우즈베키스탄 국내법이 적용된다.

3. 중재판정 또는 외국법원 판결의 집행

먼저 모든 형태의 투자분쟁에 대해 당사자간의 합의를 우선시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우즈베키스탄 경제법원에서 사법적으로 해결하게 된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이 가입한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라 해결한다. 우즈베키스탄 민사소송법 및 경제소송법은 외국판결의 승인 여부에 대해 외국의 소송법 등이 우즈베키스탄 소송법과 같은 수준의 외국판결의 승인이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의 판결을 승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소송법상 외국판결의 승인 요건;

1) 국제재판관할권의 존재, 2) 피고의 적법한 방어권 보장, 3) 공서에 반하지 않을 것, 4) 상호 보증 요구 등을 들 수 있다.

시·리·즈·목·록

국가	제목	범무법인	저자	사무소
중국 I	중국 투자·기업	광장	이상기 오승룡 최광호	광장-북경 중국 북경시 조양구 삼원교 서광서리 갑1호 동역대하(제3차업)B좌 1802실 86-10-5822-0747 mail-bj@leeko.com
중국 II	중국 세법	세종	최병선 장대훈 정천주	세종-북경 중국 북경시 조양구 소운로 36호 국향빌딩 10층 1008호 86-10-8447-5343 china@shinkim.com
중국 III	중국 공정거래	세종	최병선 장대훈 김도현 (前세종 변호사)	세종-상하이 중국 상해시 장녕구 선하로 319호 원동국제광장 A동 8층 808호 86-21-6235-0411 china@shinkim.com
베트남 I	베트남 투자·조세·노무	율촌	양은용 배용근 강수구 한윤준 안우진 Tran Anh Dung	율촌 - 하노이 Unit M01, Atlanta Place, 49 Hang Chuoi, Hai Ba Trung District, Hanoi, Vietnam 84-4-3972-8123 eyang@yulchon.com 율촌 - 호치민 Unit 03, 4th Floor, Kumho Asiana Plaza, 39 Le Duan St., Ben Nghe Ward, Dist.1, Ho Chi Minh City, Vietnam, 84-8-3911-0225 eyang@yulchon.com
베트남 II	베트남 부동산·건설	지평지성	김상준 변희경 한승혁 김주현	지평지성 - 하노이 Suite 1003, 10th Fl., Dae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 Ba Dinh Dist., Hanoi, Vietnam 84-4-6266-1901 hanoi@js-horizon.com 지평지성 - 호치민 #1605, Centec Tower, 72-74 Nguyen Thi Minh Khai Street, Ward 6, District 3, Ho Chi Minh City, Vietnam 84-8-3910-7510 hcmc@js-horizon.com
캄보디아	캄보디아 회사·세무·투자	지평지성	이행규 유정훈	지평지성 - 캄보디아 (현지상호명: In 3 Horizon Attorneys at Law) 2F No.797, Monivong Blvd. & St. 484, Phsar Doeum Thkov, Khan Chamkarmon, Phnom 02-6200-0962(인터넷전화), 855-23-726-897(사무실) yoojh@js-horizon.com eak@js-horizon.com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투자법제	율촌	이화준 문형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대치동, 섬유센터 12층) 우편번호 135-713 02-528-5200 mail@yulchon.com

저·자·약·력

이화준 변호사

학 력

- 2006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석사 과정 수료 (국제거래법 전공)
2003 :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법학부 및 법학대학원 법학석사 (최우등졸업)
2001~2002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환학생
1999~2000 :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Pre-law 과정 이수 러시아 현지 초,중,고등학교 졸업

경 력

- 2008~현재 : 법무법인(유한) 율촌
2010~현재 : 사법연수원 “현대계약법 연구-무기구매계약”, “러시아 법과 문화” 강사
2006~2008 :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 육군법무관 (러시아 무기도입 사업 담당)
2005~2006 : 육군본부 법무감실 법제과 국제법 담당 육군법무관
2004~2005 : 김&장 법률사무소
2003~2004 : 클리포드채스 모스크바 사무소
2002~2003 : 러시아 모스크바시 변호사협회 연수 (변호사시보)
1998 : 러시아 모스크바시 남서부 검찰청 연수 (검사시보)

문형철 변호사

학 력

- 2006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석사 과정 수료
2002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 력

- 2009~현재 : 법무법인(유한) 율촌
2007~2009 :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공익법무관
2006~2007 : 광주고등검찰청 송무수행단 공익법무관

이 책자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 견해로서
법무부의 공식견해는 아님을 밝힙니다.

Investment & **Business Guide**

인 쇄	2012년 10월
발 행	2012년 10월
발 행 처	법무부 국제법무과
주 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전 화	02) 2110-3661
팩 스	02) 504-1378
전자우편	ildhd@moj.go.kr
인 쇄	에이앤에프커뮤니케이션(주)
	02) 756-5171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732-01

